

#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발행일 2020. 1. 1.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중증장애인사업단 발행처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mohw.go.kr](http://www.mohw.go.kr)

\* 이 책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목차



01. 제도 개요	1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8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9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10
02. 신청 및 선정기준	21
I. 수급자 신청	23
1. 급여신청 주체	23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23
3. 신청 구비서류	24
4. 신청절차	26
5. 신청 시 안내사항	27
6. 급여신청의 효과	30
7. 신청 등록	30
8. 급여종류별 서울 민원접수 및 등록	31
II. 수급자 선정기준	32
1. 보장의 단위	32
2. 수급자 선정기준	49



III.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2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54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8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1
03. 조 사	77
I. 조사의 개요	79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79
2. 조사의 종류	80
3. 자료 제출 요구	85
4. 조사수행 주체	87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88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88
II. 근로능력 판정	93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93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93
III. 소득조사	96
1. 소득의 의미	96
2. 소득평가액산정	96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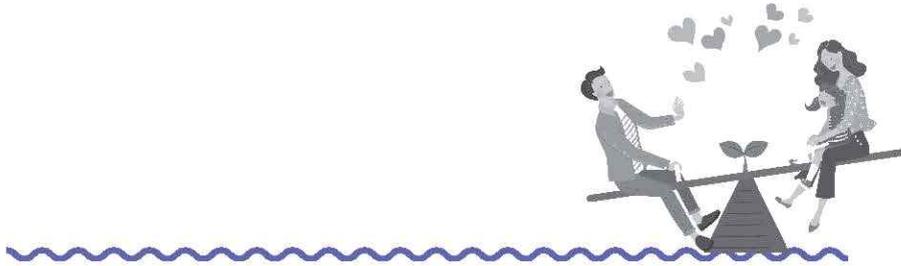
IV. 재산조사	130
1. 재산의 종류	130
2. 재산의 조사범위	132
3. 재산가액 산정기준	133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34
5. 부채	159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65
V. 부양의무자 조사	171
1.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및 조사 내용	172
2. 조사순서	172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178
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186
04. 급여의 실시	221
I. 급여의 개요	223
1. 급여의 기본원칙	223
2. 급여의 종류 등	224
3. 급여의 결정	225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227



II. 급여의 지급	228
1. 급여지급 절차	228
2. 급여의 변경	229
3. 급여의 중지	231
4. 계좌관리	233
III.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238
1. 생계급여	238
2. 이행기 보전액	254
3. 주거급여, 교육급여	254
4. 해산급여	254
5. 장제급여	255
05. 수급자 관리	259
I.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261
1. 수급자 관리 개요	261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261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262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268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269



II.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271
1. 목적 및 기본원칙	271
2. 급여관리 범위	271
3.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273
III. 보장비용의 징수	276
1. 부정·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76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84
3. 결손처분	292
4. 소급지급	292
5. 소멸시효	293
6. 고발조치	293
IV. 반환명령	294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294
2.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294
3. 반환대상자 관리	295
4.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296
<b>06. 보장시설</b>	<b>297</b>
I. 보장시설 개요	299
1. 보장시설의 의미	299
2. 보장시설의 범위	300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303



II.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304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304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305
III.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309
1. 조사 및 관리 주체	309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10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310
IV.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315
1. 생계급여	315
2.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323
3.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 참조	323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 지급 방법과 동일	323
V.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325
1. 배경	325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25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326
07. 보장기관	331
I. 보장기관	333



II.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34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334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35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338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339
III. 이의신청	342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342
2. 시·도지사에게 대한 이의신청 절차	344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345
4.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46
08.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347
I.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349
1. 취약계층의 범위	349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349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351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355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355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356
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357



II.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359
1. 목적	359
2. 급여신청의 특례	359
3. 보장기관	361
4. 보장방안	362
5. 보장절차	365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367
7. 행정사항	367
III.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368
1. 목적	368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외뢰 권한 부여방안	368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371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374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376
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377
7.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381
8. 행정사항	384
09. 서 식	387



10. 부 록	443
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445
II.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안내	450
III.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451
IV.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456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456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456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456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457
5.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457
V.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458
VI. 압류방지 전용통장	460
1. 개 요	460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460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변경 주의사항	463
VII. 성년후견제도	465
VIII.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467



# 일러두기



- “맞춤형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2014. 12. 30.)의 별칭입니다.
  - “맞춤형급여”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식을 “맞춤형급여”라 칭합니다.

- 동 맞춤형급여 지침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 표현 방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을 기술하는 경우
  - [ ]를 사용하며 [ ]안에 해당 법령 조항을 기술합니다.
  - 예시 : [법 제1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2. 각종 법령 표현 방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외 개별 법령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 「 」를 사용하며 법령 조항은 「 」바깥에 기술합니다.
  - 예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치료감호법」 제16조의2

## 3.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사항

-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2), (3), 또는 (가), (나), (다)와 같이 순서나 숫자로 구분합니다.
- 절차나 순서가 아니라도 열거되는 항목이 많으면 지침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 4.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 기술

-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는 박스로 별도 표기하거나 ※로 해당 문구의 하단에 기술합니다.



5.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특별히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상”, “~미만”으로 표기합니다.
- 수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40% 이상( $40\% \leq$ ), 85% 미만( $<85\%$ )과 같이 표기합니다.

6.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즉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은 “~이하”입니다.
- 이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1인 가구의 값이 527,158원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27,158원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leq$  527,158원)

- 또한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 표시

-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은 지침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8.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의 표현에 대한 사항

-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하는 것으로[법제2조제6호]
-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은 동일한 값을 가지나 문맥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하였습니다.
- 즉, 생계급여 수급자 최저보장수준과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동일한 값이며 동일한 내용입니다.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주요 개정사항

### ●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 - 6인기준)

● 제2편 : 신청 및 선정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72p)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4) 급여의 개시 : 군 전역예정자는 보장 결정일이 급여개시일이고, 군 전역자는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4) 급여의 개시 : 군 전역예정자는 보장 결정일이 급여개시일이고, 군 전역자는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며, <u>군 전역자는 전역 후 10일 이내 신청시 전역일을 급여개시일로, 10일 이후 신청시엔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u>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신설 (72p)	자.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 (특례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대인양육을 통해 보호되는 아동으로,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되는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되는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호조치된 경우 ○ (적용방법) 금융재산 회신 이전이라도 공적자료만으로 대상자 책정 후 먼저 지원 하고, 나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 조치	

● 제3편 : 조사

구분	2019년	2020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102p)	< 신 설 >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하며, 기존 30% 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기준 유지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u>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u>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131p)	<b>【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b>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165p)	<b>【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 적용금액】</b>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167p)	<b>【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적용금액】</b>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0,000만원 이내	7,300만원 이내 6	,600만원 이내
	의료급여	8,500만원 이내	6,5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 (추가조건) 금융재산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이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 산정 (178p)	※ 직계비속에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30세 미만인 경우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수에 포함,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대학생인 경우 포함		※ 직계비속에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34세 이하인 경우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수에 포함, 34세 초과인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대학생인 경우 포함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183p)	< 신 설 >		(4)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입급 내역 등으로 확인된 양육비 지원액 ※ 단, 부양능력 미약으로 부양비 부과 대상자의 경우 소득 공제와 부양비 공제 중 유리한 공제 선택 적용(중복 적용하지 않음)하며, 3개월 이상 지원 하는 경우 적용	

<p>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과율 (201p)</p>	<p>나) 생계급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부과</li> <li>※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10%</li> <li>※ 다만,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295만원 중 더 높은 값) × 10%</li> </ul>
<p>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212p)</p>	<p>마)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권)자 가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평가 기준으로 적용</li> </ul> </li> <li>○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li> <li>*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li> <li>-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 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li> </ul> </li> <li>○ 별도가구로 보호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부양의무자가 기준 적용</li> <li>*예)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li> </ul> </li> </ul> <p>(2) 적용대상 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3) 유의사항</li> <li>○ 해당 장애인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li> <li>*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기준 적용 가능</li> <li>○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li> <li>○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li> </ul>



● 제5편 : 수급자 관리

구분	2019년	2020년
수급자 증명서 발급 (261p)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40조]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신 설 >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40조]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u>신청자가 수급자 본인인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 증명서 확인 후 발급 가능</u>

● 제6편 : 보장시설

구분	2019년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자격 관리 (315p)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 급여 지급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 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인 의료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 좌 동 >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 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인 <u>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u>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 시설 생계급여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316~317p)	<b>【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b>					
	지급기준 구분(현원)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48,803원		2,496원	
	30인 미만 시설		260,245원		2,647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36,251원		2,315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27,139원		2,277원	
	300인 이상 시설		227,122원		2,271원	
	<b>【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b>					
	구분	지급 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매년 10월 (연1회)	36,434원	33,075원	31,799원	31,797원
특별위로금 급여	설·추석 전월 (연2회)	37,300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 제1편 제도 개요

-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Ⅰ 기초생활 업무처리 개요 Ⅰ

#### 1. 급여의 신청

#####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법 제21조제1항]

#####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 제21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군·구청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2.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장기관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법 제22조]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가. 급여의 결정

- 보장기관장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법 제26조제1항]
  - 보장기관은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이때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대한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생계·의료·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하고, 교육급여의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

####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 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 통보서(서식7호)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법 제26조제3항]
  - 보장결정은 급여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
    - ☞ 반드시 보장기관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통지되어야 하며, 읍·면·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 ☞ 수급자로 보장결정 된 자중 교육급여에 대한 결정통지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함 [법 제12조제4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 절차 안내에 대한 서면 통지 필요

####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함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서식 9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교육급여만 신청한 자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수급자의 접근성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의신청 신청을 대행 함

###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 가.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 교육급여의 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 나.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 교육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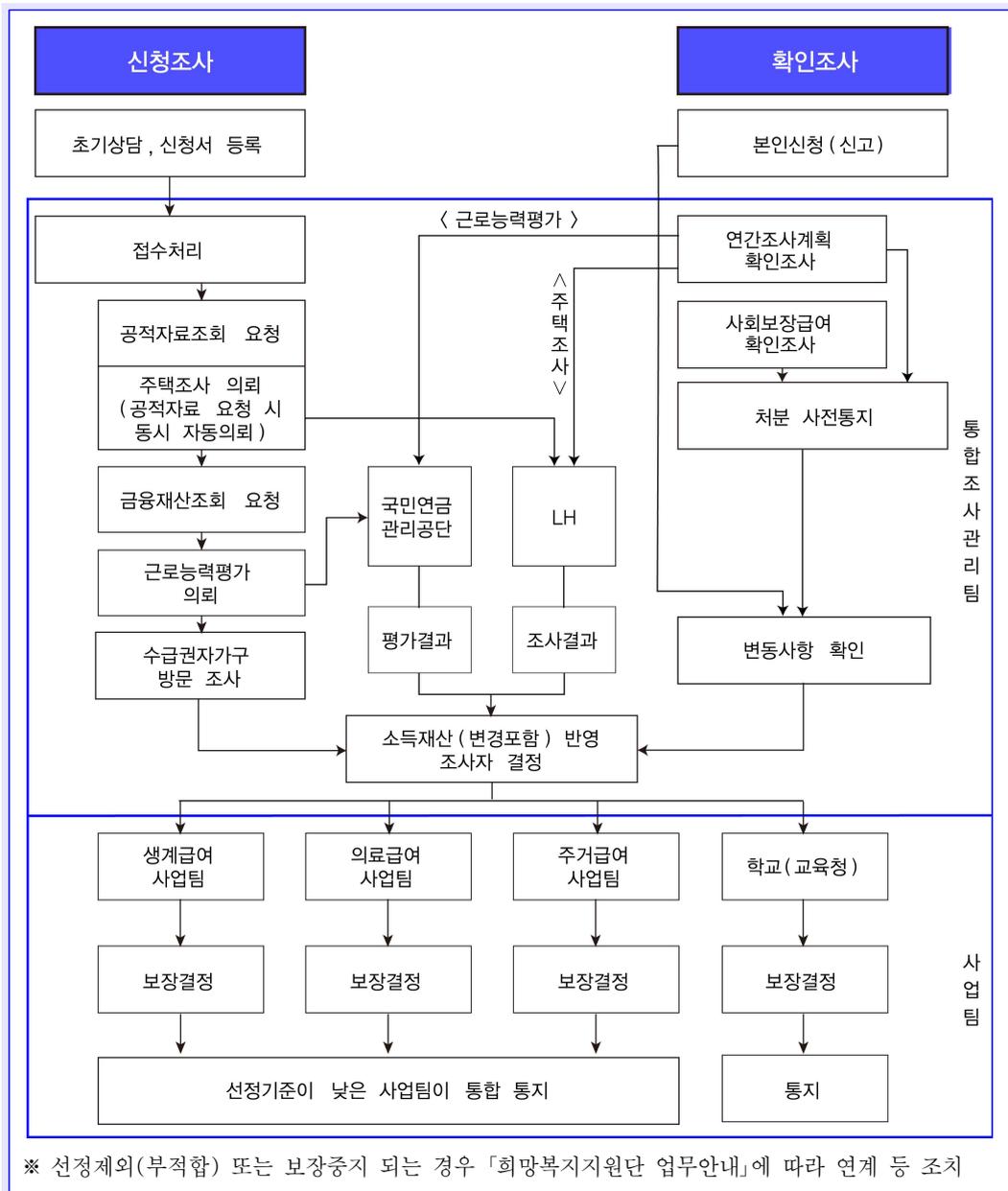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li> <li>※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li> </ul>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li> <li>•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li> </ul>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li> <li>-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li> </ul> </li> <li>•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li> </ul> </li> </ul>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li> </ul>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li> <li>-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li> <li>-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li> <li>-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li> <li>※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li> <li>-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li> <li>-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li> <li>- 기본재산액 : 급여별 기준금액 차이</li> <li>• 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li> <li>• 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li> <li>-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li> </ul>

구 분		내 용
	부양의무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li> <li>•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li> <li>-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li> <li>-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li> </ul> </li> <li>•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li> </ul> </li> <li>•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li> <li>- 기본재산액 : 대도시(22,800만원), 중소도시(13,600만원), 농어촌(10,150만원)</li> <li>-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li> </ul> </li> </ul>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li> <li>•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li> <li>•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li> </ul>
급여	종류 및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li> <li>•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li> <li>•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li> <li>•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li> <li>•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li> <li>•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li> </ul>



##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 가. 읍·면·동 : 대민 서비스 창구

- 읍·면·동은 상담·신청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신청·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읍·면·동에서 업무 처리
    - ※ 단, 민원인의 상황 등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도 처리할 수 있음
  - 교육급여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 접수는 학생의 낙인감 방지와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신청 대행

### 나.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자격관리

-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
  -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수급자 선정이후 확인조사 등을 통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산조사, 확인조사, 이의신청에 따른 자산조사 재확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탁에 따라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실시하며, 자산조사 재확인 결과를 시·도교육감에게 결과 통보

### 다. 시·군·구(급여종류별 보장팀) : 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징수·이의신청 등

- 자산조사 이후 수급(권)자 보장 결정 및 급여지급, 이의신청, 부정수급통보, 보장비용 징수 등 보장결정 이후 사후관리
  - ※ 상기 기관별 업무 역할은 해당 보장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달리 운영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장기관은 시·도교육감으로 교육급여와 관련된 보장결정, 결정통지, 급여지급 등 사업팀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급여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 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업무 사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는 시·군·구에서 처리
  - ※ (참조)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5% 초과 50% 이하)의 신청·조사(신청조사, 확인조사, 변동사항 관리)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보장결정을 포함한 이후 업무는 시·도교육감의 소관임
- 업무 위탁에 따라 이의신청 신청 및 신청서작성, 소득재산조사 관련 내용 재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대행하며, 이의신청 처분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함

##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가. 신규 신청자

#### 1) 신청 (읍·면·동)

##### 가) 신청서 작성

- 신청서(서식1호) :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처리 기한, 본인신고의 의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3호) : 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동의서를 징구
- 기타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신청 시 추가요청 할 필요 구비서류 목록(서식43호)을 수급자에게 전달
- 보장기관은 신청접수 및 조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용 발급하여 활용하여야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사유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장기관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지침 252쪽 “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 신청한 수급자의 급여지급” 참조)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시 안내(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참조)

나) 급여 신청

○ 동 제도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 수급권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의료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음

- 이에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신청 자료 등록 시 정확하게 입력 필요

-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제출은 요청하지 않음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맞춤형급여 시행 이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한 것으로 함
- 맞춤형급여 시행 후 수급권자의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 신규 신청하는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 신청을 희망하여도 동 수급권자가 특별히 급여종류별 신청을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합신청의 장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을 유도
  - ※ 급여종류별 신청을 하는 이유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신청하나 가구원 중 특별히 질환자가 없어 건강보험료를 자부담하는 것을 감수하고 낙인감을 우려하여 의료급여는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
- 맞춤형 급여 중 생계·의료급여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수급(권)자 서류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합신청으로 볼 수 있으며,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장결정하여 지급 가능



- 통합신청의 장점
  - 신청한 급여는 최초 보장결정 시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일부 급여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것으로 보장결정 하여도, 동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변동 사항 반영의 적정성 확인 후 추가 보장결정 하여 지급 가능
  - ※ A씨가 4가지 급여를 통합신청 하였고, 보장결정시 A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되어 주거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지급)로 보장결정 하였더라도,
  - 추후, A씨에 대한 확인조사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28%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장기관은 변동사항 반영의 적정성 확인 후 생계·의료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수급자(즉, 생계급여수급자)로 A씨를 변경하여 보장 할 수 있음
- 급여종류별 신청의 단점
  -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한 경우, 보장기관은 신청한 급여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함
  - 이에, 차후 수급자의 사정변경(소득평가액 감소, 근로능력상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신청하지 않은 급여 선정기준 이하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여도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수급자가 해당급여에 대하여 별도 신청이 있어야 보장기관은 해당급여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 B씨가 최초 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신청하였고 소득인정액 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42%로 확인되어, 보장기관은 신청한 주거·교육급여만 지급하였으나,
  - 추후 B씨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5%임을 확인하더라도 B씨가 신청하지 않은 생계·의료급여는 별도의 신청이 있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이에 보장기관은 추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을 B씨에게 안내하여야 함

다)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급여신청일 자동부여

2)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가)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주거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적자료 회신 후 판정 자료를 근거로 주거급여 지원 가능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주택조사를 요청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실시
    - ※ 주택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조사결과 반영 방법, 급여지급 등 사후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침에 따름
    -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는 조사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요청
- 나)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 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부양의무자가 부양기피·거부 등의 사유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되었더라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실시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 및 확인 실시
    -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 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 등
- 다)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주택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근로능력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결정



3)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학교(교육청))

- 조사결과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급여 지급대상자로 보장결정하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 보장결정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 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
  -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고 결정통지도 시·도교육감이 발송함

【 보장결정 및 보장결정 통지 방법 】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시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로 확인된 경우(부양의무자 급여별 기준 충족)
  -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수급권자 없음)
  - 보장 결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담당자가 각각 해당 급여 보장 결정 실시하고 교육급여는 수급권자가 없으므로 결정대상 아님
  - 결정 통지 : 생계급여 업무 담당자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시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된 경우(부양의무자 급여별 기준 충족)
  -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보장 결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담당자는 보장 부적합 결정, 주거급여 담당자는 보장 적합 결정, 시·도교육감은 교육급여 사업안내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결정 통지 : 생계급여 업무 담당자가 통지(수급권자의 신청 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 담당),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별도 통지
-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 시(의료급여, 주거급여만 신청)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된 경우(부양의무자 급여별 기준 충족)
  -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 : 주거급여
  - 보장 결정 : 의료급여 담당자는 보장 부적합 결정, 주거급여 담당자는 보장 적합 결정
  - 결정 통지 :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가 통지(수급권자의 신청 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 담당)
  - ※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시·도교육감의 소관

## 4) 수급권자는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보장방법

- 수급권자는 “취약계층 우선보장”으로 생활이 어렵고,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미제출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를 적용하여 수급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결정하며,
  - 상기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여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 취약계층 우선보장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제도 】

##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나 수급자가 “취약계층으로 우선보장이 필요한 대상”인 경우의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여 보장여부 결정
  -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이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의 한 사례로,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워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보장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는 우선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비용 징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후 결정하는 방식의 수급(권)자를 의미함(지침 209쪽 참조)

## ■ 제도 운영 절차

- 1단계(신청제한 금지)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초기 상담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보장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 2단계(신청서류 완화) 신청서 접수 후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제출가능 서류에 한하여 우선 접수
- 3단계(공적자료 조사) 보장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접수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실시
- 4단계(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은 보장이 가능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 여부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및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 5단계(보장여부 우선결정)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여부를 종합하여 우선보장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장여부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발송
- 6단계(보장비용 사후징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수급자를 보장하기로 결정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 이의신청을 하려는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처리
-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 신청대행을 할 수 있음(지침 345쪽 참조)

나. 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스템)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주거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가) 소득·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를 들어,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나)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 사망 의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여부를 확인
- 전출·전입 등에 따라 주거상태가 변동된 경우에는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산정을 위하여 자가 여·부, 임차보증금, 임차료(월세, 사글세 등), 사용대차 여부 등에 대하여 LH에 조사의뢰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주거급여액 재조정
- 전출·전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다)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매월 급여생성 마감 전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하여만 다음 달 급여 변동가능

## 3)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양곡 공제 : 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수급자의 '양곡공제 연간계획'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액에서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간 30일 이상 장기입원 하여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생계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 (건강보험공단 통보분 자동 반영)
- 예상급여액 확인 시 급여생성 이상자(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상계 계획 수정
  - 양곡공제 이상(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양곡 계획 수정

## 4) 급여지급자료 생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급여 지급자료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 산정된 소득인정액 및 주택조사 정보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 생성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생성

## 5)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 급여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종류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과의 차액을 보충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및 자기 부담분을 반영하여 지급
  - ※ 주거급여에 대한 급여액 산출방법, 급여 지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름



- 장제·해산급여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생·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며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교육급여 :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시·도교육감으로 2015년 7월부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급여의 신규 신청 및 조사까지만 담당하며 보장기관의 책임에 해당하는 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업무는 시·도교육감이 보장기관이 됨
    - 단, 이의신청 신청 및 확인조사 시 소득재산 재조사 등의 업무는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 6)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시·군·구 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도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지급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후 지급

### 다.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알림
-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등)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확인조사로 변경하여 실시
  - ※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나 이외 입·퇴학 등 학적변경, 전·입학 등 변동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처리

#### 2) 급여중지 요청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결과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중지 요청
  - ※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경사항은 조사결과가 자동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전송되어 시·도교육감이 처리

## 3) 급여중지 및 결정 (시·군·구 사업팀)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는 급여 중지
- 2개 이상의 급여에 대해 보장중지를 통지하는 경우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서면으로 통지(교육급여인 경우 시·도교육감)

## 4) 보장비용 징수 (시·군·구 사업팀/회계부서)

- 보장비용의 징수는 급여를 지급한 각각의 부서(교육급여인 경우 시·도교육감)에서 처리

## 용어정리

- 생계급여수급자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등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생계급여수급자”라 함
- 의료급여수급자란 :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의료급여수급자”라 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 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주거만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주거급여수급자”라 함
-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교육급여 대상인 학생 개인을 개인단위로 “교육급여수급자”라 함. 학비를 직접 지급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는 동일보장가구로 조사대상이나, 보장결정시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님
- ※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교육 급여를 받는 개인 수급자를 의미함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I. 수급자 신청
  - II. 수급자 선정기준
  - III.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 I. 수급자 신청

### 1.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급여 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참조



### 3.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가.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li> <li>•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기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적등본</li> <li>•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li>• 사용대차 확인서</li> <li>• 소득·재산 확인서류</li> <li>•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li> <li>•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ul> </li> </ul>

####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 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 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또는 제외되는 사람의 확정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마.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필수사항 아님
    -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과약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 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1호] 제출 안내(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 사용대차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

##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사.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함



## 4. 신청절차

### 가.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

- 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라. 신청 접수

-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 받지 않도록 유의 (법적 다툼 시 문제 소지 있음)

### 마. 서류보완 안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 5. 신청 시 안내사항

### 가. 처리기한

-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나.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 다.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43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요망

#### 라. 통지방법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법 제26조제3항]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준용
    - ※ 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결정 단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 ※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 아.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보장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 6. 급여신청의 효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제출한 날이 ‘급여신청일’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붙임을 생략할 수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름)
- 신청조사 실시 : 3편 “조사” 참조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4편 “급여의 실시” 참조

## 7. 신청 등록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 8. 급여종류별 서울 민원접수 및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서울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급여종류별로 자동 부여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한 경우에도 민원사무분류번호 및 민원접수번호는 급여종류별로 부여
    - ※ 단, 교육급여의 경우 민원사무분류번호는 채번되거나 유기한 민원으로 관리되지 않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민원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고 교육급여 민원처리는 조사까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며, 조사 이후는 시·도교육감이 담당하여 최종 보장결정 처리



## II. 수급자 선정기준

### 1. 보장의 단위 [시행령 제2조]

-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법 제4조제3항]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또는 별도가구 보장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 가. 가구단위 보장 [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임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 1) 보장가구의 범위

#####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임
  -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은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급권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음
- 즉, 재외국민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수급(권)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양의 무자로 판단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②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함
- 따라서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미실시하나, 보장가구 확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유무 여부는 판단해야 함



-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주 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 가구에 포함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 예시1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예시2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1세의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이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가 아니나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함
  - 예시3 :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예시4 : 부, 부와 이혼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하여 2인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예시5 :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예시6 :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보장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인 부와 (외)조모를 포함한 3인이고,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 상기 가구구성에 따라 보장가구원의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제2항]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132쪽 참조)

-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 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조사시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기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 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는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며,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 ※ 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및 소지자에 대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참조)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 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 교정시설 입소자인 모와 동반 입소아동은 보호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유, 이유식 등 급량비('20년 약 43만원/월)를 차감한 후 생계비 지급, 의료급여자격 유지
-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 가출·행방불명 신고·해지 여부는 행복e음시스템 변동관리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
  - ※ 거주불명등록자로 등재된 자로서 보장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장방안(357쪽 참조)
-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재외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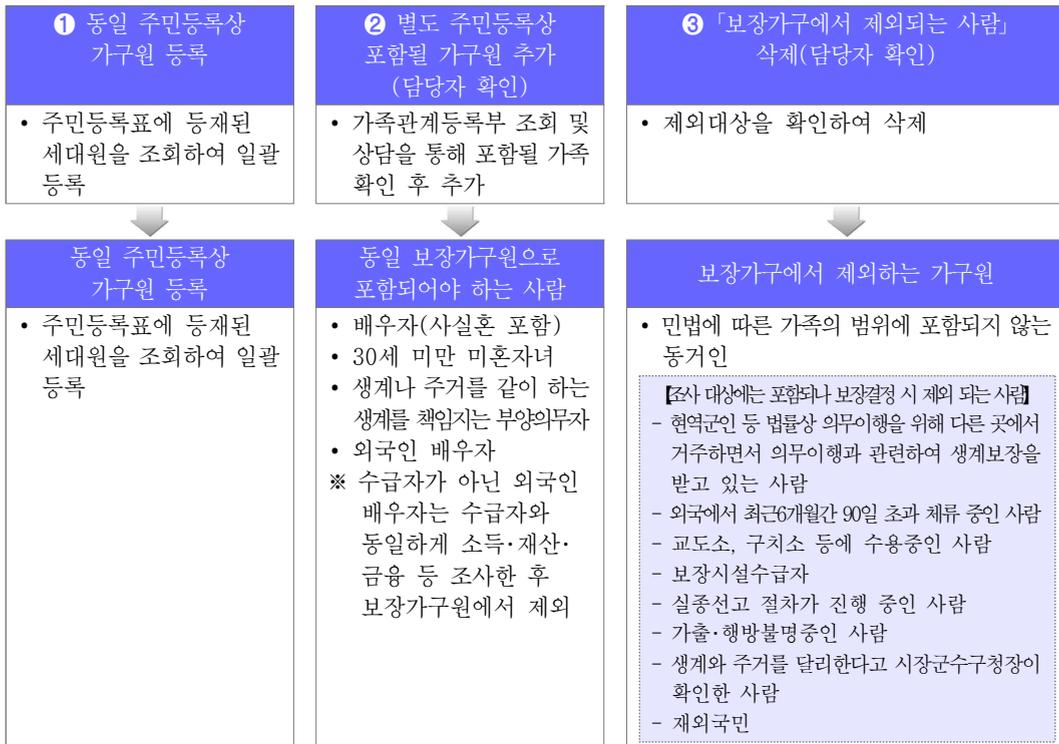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 “I.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절차 준용(349쪽 참조)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1)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2)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 중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할 구성원 추가
- (3)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가구구성 처리 절차】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가구원’은 조사 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가구구성 입력 방식

용어설명

- 조사대상가구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
- 소득산정가구 :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 보장가구 : 수급자로 보호하는 가구원

적용방법

- 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사항은 조사대상가구로, 가구원수 산정에 대한 사항은 소득산정가구로 다음 표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기능 개선

【조사가구구성 화면】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 생략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동		김○○	...	...	가구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남편	보장동		이○○	...	...	남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자	보장동		이○○	...	...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남편이 교정시설입소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가구는 2인기준 소득인정액 적합여부 판정, 남은 2인의 수급자 보장여부를 판정해야 함  
 - 다만, 남은 보장가구원 2인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남편 명의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가구로 선택하여 관리함

유형별 조사가구구성 사례

(1)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 생략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1동		이○○	...	...	가구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남편	보장1동		김○○	...	...	남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자	보장1동		김○○	...	...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사례구성 : 남편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원 일부가 지침 35쪽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로 선택(소득산정대상 및 보장대상 가구원은 아님)하여 남은 보장가구원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사용·수익 하는지 여부 지속 관리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을 남은 보장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며,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이 조사되었으나 남은 보장가구원이 사용·수익하지 않는다면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조회된 소득은 남은 보장가구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예를 들어, 남편이 교정시설에 입소하였는데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는 주택·임야가 조회되고 소득으로는 연금급여가 조회되었을 때, 남은 보장가구원이 남편 명의의 주택은 거주(사용)하나 임야는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면,

- 해당 주택은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임야는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또한 남편이 교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연금급여를 받고 있다 해도 이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남편의 소득이므로 남은 보장가구원의 소득으로는 반영하지 않음
- 다만, 연금급여가 입금되는 예금을 남은 가구원이 현금카드 등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연금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소득은 재산으로 종류가 변경됨)는 해당 예금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남은 가구원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해야 함
- 해당 연금급여의 수령인을 배우자나 자녀로 변경하여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 등으로 남편의 연금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도 전액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소득이 조회된 사실만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로 판단하지 않음)

(2)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번호	관계	소계행정동	~ 생략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2동	~	최○○	...	...	가구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처	보장2동		호○○	...	...	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사례구성 : 처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지침 113쪽 “1) 사적이전소득 /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3) 소득반영 비율 / (다) 외국인 특별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반영 방법에 따라
-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를 조사대상가구로 선택하고, 소득이 있음이 조사되는 경우 해당 소득 중에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남은 가구원(예를 들어, 위 표의 가구주)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
  -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과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성격이 다르므로 소득·재산 반영 방법이 구분되어야 함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이나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사람이고,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은 수급권이 없어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임



(3)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인 경우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 생략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의료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3동		김○○	...	...	가구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처	보장3동		이○○	...	...	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자	보장3동		김○○	...	...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수급자의 가구구성 방법은 동일함

※ 군 입대 또는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이나 특례수급자가 아닌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1)번으로 관리하고, 특례수급자가구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3)번으로 적용

- 두 특례는 군 입대,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 등으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하는 특례이므로,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대상가구로 선택하고, 특례 적용을 위해 소득산정가구도 선택함(보장가구는 선택하지 않음)
  - ※ 동 사례에서 군입대자 또는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을 소득산정가구로 선택한다고 해서 동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조회된 소득·재산 전부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남은 보장가구원이 동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만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함

(4) 가구원 중 일부가 급여를 거부하는 경우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 생략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4동		김○○	...	...	가구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처	보장4동		이○○	...	...	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자	보장4동		김○○	...	...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처인 가구원이 급여를 거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급여를 거부하는 사람은 급여를 중지할 수 있으나, 급여를 거부하는 자를 소득산정가구에서 빼고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소득 등으로 수급자 선정이 곤란한 가구원이 고의로 신청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를 거부하는 사람은 소득산정가구는 선택하고 보장가구는 선택하지 않음
  - ※ 동 사례는 3인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하며, 보장하지 않는 처에게 조사된 소득·재산은 모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함

## 나.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1)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 적용

가)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별도가구 보장 : 제6편 보장시설 참조

### 나)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 친권자의 양육비 지원은 부양의무자로 부터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검토
- 친부모사망 후 위탁아동의 상속된 재산(사망보험금 등의 동산, 부동산)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 처분이 곤란한 미성년 아동에 대한 재산특례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제외 검토

(1)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2)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 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3)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1), (2)의 경우 제3자 부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나, (3)은 주거급여가 미지급 되기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미부과



##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가)와 나) 모두)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조사 실시 이전이라도 수급(권)자와의 상담과정 등에서 가구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장이 가능한 가구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별도가구 보장의 1-4급 등록장애인 규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중 근로능력 없다고 판정된 사람도 포함함
  - ※ 기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시까지 그대로 인정

### 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 그 부양의무자(미약구간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비가 부과되는 모든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려는 제도

(1)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가구로,

-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18세 미만 손자녀 (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를 별도가구로 보장

-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함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회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가구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 동일보장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 보호 가능

####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 원칙

- ❶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단, 동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 미적용)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❷ 별도가구의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인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보장 실시
  - 2항 상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가구원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가구원을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분리하여 각각 별도가구로 보장 실시 (46쪽 예시 4 참조)
- ❸ 하단의 (1)~(7)의 별도가구 인정사례 중 “~집에서”의 의미는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대차 포함)을 모두 포함
- ❹ 동 별도가구 보장 적용 시 별도가구가 부양의무자 등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 부과



-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 (가) 65세 이상의 노인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다)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 (라)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 (마) 18세 미만의 사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
  -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 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부가구,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정 포함)
-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는 (3)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조항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포함 중으로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로만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단,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에게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동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 사례

- 예시 1 :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또는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 예시 2 : 형제의 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 동생 2인을 1가구 2인으로 별도가구를 인정하여 보장
- 예시 3 : 65세 이상인 모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가 모의 형제 집에 전입하는 경우
  - 모와 장애인 자녀를 1가구 2인으로 보장
- 예시 4 : 65세 이상인 조모의 집에서 한부모 가정인 딸 가족 및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인 재(손자)가 한 가구로 생계·주거를 같이할 때, 조모의 부양능력 있는 다른 자녀가 있어 가구 전체로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가구 인정 방법
  - 한부모 가정인 딸 가족과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 재(손자)는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므로 두 가족을 하나의 별도가구로 보장 불가
  - 한부모가정인 딸 가족은 “가구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6)번의 ‘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으로 별도가구 보장, 손자는 (4)번의 ‘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별도가구 보장 가능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가)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 ※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여 2018.1.1.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3년 적용기한 종료시까지 계속 적용 가능)

## 나) 보장내용

-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 ※ 취·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취·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 ※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창업 자녀의 소득 인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침 191쪽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참조
  - ※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의 “있음” 기준 없음.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이 미약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양비 부과율은 10%(의료급여 15%)임

## 다) 적용기한

- (1) 취·창업자녀의 만 18세(2002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198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정 가능
- (2) 복수의 취·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 ※ 단,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 라) 사후관리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례구분 메뉴에 입력·관리
  - 특례시작일은 특례결정일, 종료일은 적용기한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 또한, 상담내역에 시작일, 기한 전 종료 시 산정사유 등을 작성 관리
- (2) 동 보장을 적용받는 가구의 취·창업 자녀가 실직·퇴사 등으로 일반수급자로 전환 하였더라도 적용기한 내에서 재적용 가능



마) 유의사항

- (1) 부양의무자로 처리된 취·창업자녀(조손가정의 취·창업 손자녀 포함)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받는 수급자 가구원 중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는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재적용하지 않음
- (2)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손자녀는 보장 가구원도 아니고 부양의무자도 아님
- (3) 취·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소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기준 상하한은 없음
- (4) 동 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동 별도 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권)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음

■ 예시

- 서울지역의 무보증월세 36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 만 19세인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을 하여 월 60만원의 임시고용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급여지급의 경우가 발생함

구분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3인, 소득인정액 0원)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4인, 소득인정액 14만원*)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 계	1,520,173원		1,644,752원	
생계급여	1,161,173원	1,161,173원(3인 생계급여기준) - 0원(소득인정액)	1,284,752원	1,424,752원(4인 생계급여기준) - 14만원(소득인정액)
주거급여	359,000원	1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 359천원 < 실제임차료 36만원	360,000원	1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 415천원 > 실제임차료 36만원
의료급여	3인	남은가구원	4인	취·창업자녀 포함

\* 산출기준 : 14만원(소득인정액) = 60만원(근로소득) - 46만원(근로소득공제, 40만원 추가 30%)

- 위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의 급여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급여보다 더 유리하며, - 또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의 생계·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창업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수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

### 다. 개인단위 보장[법 제4조제3항]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 2.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가. 기준 중위소득

#### 1) 기준 중위소득이란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속

#### 2)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 (1) 산정방식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 (2) 기초자료 : 「통계법」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 “가계동향조사 (농어가 포함)” 사용
- (3) 가구규모 균등화 :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



### 3)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83,347원씩 증가

## 나. 소득인정액 기준

###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0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가구 기준) + 265,005원(7인가구-6인가구 기준)

### 다. 부양의무자 기준(세부내용은 지침 171쪽 참조)

####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법 제12조의2]

####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 제14조의2]

#### ■ 각종 특례 요약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가) 수급(권)자 가구구성 등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		
○ 외국인에 대한 특례(34쪽)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맞춤형 급여체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58쪽)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1명기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60쪽)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자 특례(61쪽)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62쪽)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63쪽)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64쪽)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65쪽)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68쪽)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70쪽)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72쪽)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72쪽)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나)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167쪽)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192쪽)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305쪽)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 일반수급자(A+B)*18%	보장시설 수급자
(다)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		
○ 의료급여 특례(54쪽)	-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55쪽)	-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인상 특례(72쪽)	- 기초연금 인상(5만원)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이하의 급여 탈락자에 대한 2년간 추가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부내용은 해당 특례편 참조



##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 가. 의료급여 특례

#### 1) 운영 기본 원칙

- 동 특례는 지속적인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게만 적용하는 개인단위 급여 특례임
- 가구 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구 전체(특례적용대상자 포함)를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보호하며, 특례 적용대상자 가구원 개인만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

#### 2) 적용대상자

- 수급(권)자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평균금액을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동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의료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감소하여, 감소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적용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

#### 3) 적용방법

-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출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대해
  -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의료비를 산출하고 그 평균 의료비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적용하여 동 특례 적용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 질환명 및 치료기간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평균의료비 산정을 위한 진료비(약제비 포함, 간병비 제외) 영수증 첨부

#### 4) 특례 급여내용

- (1) 의료급여 : 지속적인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가)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나)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를 제외한 기타 질환자
- (2)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 5) 사후관리

-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 및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본인부담 의료비 공제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 여부 확인을 위해
  - 가구 전체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질병의 지속 여부 및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여부 확인을 위해 연 1회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 받아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특례기간을 1년 단위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특례기간 내에 재조사 되지 않으면 즉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가구단위로 보장여부 결정

## 나. 자활급여 특례

### 1) 운영 기본 원칙

-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즉시 보장여부 결정
- 특례기간 중에 특례 수급자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 일반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 2)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

#### 가) 적용대상자

-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나) 기준초과 판정시점

-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 때문에 3개월 평균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기준초과 판정시점이며, 그 다음달 1일부터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 기간에서 제외
- 일반수급자에서 자활급여 특례수급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생계급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수급자 가구에 계속 지급
  - 전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당월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음
  - 전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당월 생계급여 지급함

다) 특례기간

-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5년. 단, 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라) 특례 급여내용

- (1) 생계급여 : 중지
  - 단,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일시적으로 가구의 전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급여변경 결정하고 당월 생계급여 지급
    - ※ 이후 자활사업이 재실시 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보장중지
- (2)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 (3)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4)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격 부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되 급여 미지급 처리
- (5) 교육급여 : 해당 가구의 교육급여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6)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마)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 (1)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보장가구원에 대한 소득 등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
- (2) 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다음의 사유로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결정하고 해당급여를 지급
  - (가) 특례수급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 (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특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다) 자활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특례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곤란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3) 다음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가) 특례 보장기간 5년이 도래한 경우(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 보장중지 처리)
  - (나) 자활급여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판정기준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자활급여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인정액만으로도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 (라) 특례 보장기간 중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바) 수급자 증명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실제 받는 급여 중 가장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기준)



##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가. 북한이탈주민

#### 1) 적용 기본 원칙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 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 ※ 동 특례는 최초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하고 익월부터 일반수급자로 조사

예시 '15.1.1 정착지원시설 소재지에서 보장결정 후 최초전입, '18.1.20. 보장중지,  
'18.7.1 재신청한 경우

- 조사시점(18년 7월)에 근로 무능력 북한이탈주민 가구인 경우는 '18.7월 다시 보장결정시 북한이탈주민 특례자로 보장결정 가능하고(특례 기간 5년 미도래), 최초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날 다음달 '20.2월부터는 일반수급자 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 하여야 함

####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1) 소득인정액 기준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2)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단, 정착금 등 재산 산정 제외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 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자동차 :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

(4)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단,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 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	맞춤형급여의 일반수급(권)자와 동일							
근로무능력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2,481,920
* 가구원 수에 + 1명 기준 적용	의료급여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3,309,22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가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급여기준 및 교육급여 선정·급여기준은 해당 지침에 따름

3) 생계급여 지급방법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급여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즉, 1인가구는 2인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2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 단,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 적용

(2) 근로능력자가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정착지원 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도

- 조건제시를 유예하고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 후 (7개월~5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

4)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장결정 방법

(1) 자격관리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 관계자가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 하나원 관계자는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의료급여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퇴원 후 거주지 주소(임시거주지 주소 포함))을 보장기관에 반드시 통보
- 하나원으로 부터 신청된 명단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여부 결정하되, 재원 중에는 타 급여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의료급여(타법)외 다른 급여는 미지급
  - ※ 보장기관은 필요시 하나원 관계자에게 특례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및 가족 이력 등 하나원의 조사내역을 조사 및 보장결정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2) 변동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원 시, 하나원은 거주지 배정 명단을 첨부하여 보장기관과 전입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 통보
  - ※ 하나원은 퇴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라 배정된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반드시 안내
- 전입지 보장기관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초전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즉시 모든 급여 지급 개시
- 전입지에서는 전입 즉시 구비서류 징구 및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의 소득인정액 확인 등 확인조사 실시 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3) 급여지급

- 하나원 재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는 미지급
- 최초거주지 전입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개시일에 해당
- 최초거주지 전입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 :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화천군

나. 일본군위안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급여실시
  - 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 (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 생활안정지원금 및 그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 :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더라도 일군위안부인 수급자는 별도 가구로 처리하여 보장

###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1세 유자격자: '45.8.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 (이외의 자는 무자격자)

- (1) 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 (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2) 재산 :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 (3)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 (4) 1세 유자격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를 지급받음
  -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소득평가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 (5) 1세 무자격자, 2세(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경우
  - 국적 취득시 1세 유자격자와 동일 특례 적용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 3년 범위내 보장

- 국내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가 유예
-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인 경우,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 나.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권)자 특례

### 1)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 (1) 한센인인 수급자가 농어촌지역의 격리된 정착촌에 거주하는 경우, 동 거주지는 외지인의 수요가 없어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인정되면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 정착촌이 도심 또는 도심인접권에 있어 토지·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차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와 정착촌이 아닌 곳에 위치한 토지·건물 등은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라 할지라도 임대업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특히, 도심인접권 정착촌의 경우)하고 있는 등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
- (2) 일본의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3) 한센인 본인의 국가배상금(임신중절, 정관수술) 재산산정에서 제외

### 2)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 한센병력자가 그동안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한센병력자는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급자는 보장하고,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은 한센병력자 가족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 면제 가능
    - (가)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나)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확인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다) 소득인정액(부양비 부과액 제외)이 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한센병력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세대를 이룬 경우 부모의 병력 등에 대하여 밝히기를 꺼려하고 혼인상태인 경우에는 특히 부모의 병력존재 등을 배우자에게도 밝히지 않음을 고려하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폭넓게 인정

### 3) 소록도병원에 입원 중인 한센인의 관리

#### (1) 소록도병원은 수급자가 입원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주소지 보장기관에 동 수급자의 입원사실 통보

※ 수급자인 한센인이 소록도병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라도 전 거주지 보장기관에서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경우 (2인가구 중 1인이 소록도병원으로 전출하였음에도 전 거주지에서 소록도병원 전출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은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배우자만 소록도병원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등)에는 소록도병원은 해당 수급자의 전입 여부를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2) 장기입원 공제 금액을 적용하여 생계비 지급

#### (3) 소록도병원 입원으로 타법 급여수준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나 퇴원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 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 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 1)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 HIV 감염자 중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세대)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

### 2) 재산의 소득환산 시 특례적용

○ 사회적 편견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는 재산의 소득환산 시 일반재산으로 간주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3) 조사 상담 시 고려사항



- HIV 감염자에 대한 건강관련 조사는 최초 제출한 일반진단서 등에 따라 근로무능력자로 관리
- HIV 감염자에 대한 상담 시 별도의 상담실 활용 등 배려
- HIV 감염자의 개인정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특히 관리에 유의하여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라.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 특례인정 사유 : 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민가구에 대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인정

#### 1)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균액 산정 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
  - (가)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말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받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나) 농어민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 ※ 보육료뿐만 아니라 기타 부가비용(특별활동비, 간식비 등) 지출비용 차감 가능
  - (다)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의 일부 완화 적용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라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 마.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특례

### 1) 운영 기본 원칙

-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 중인 수급자 가구가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의료급여 지급
- 동 특례수급자 가구가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일반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 2) 적용대상

- (1) 정부 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2) 대학졸업 필수과목인 해외실습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 졸업 필수과목여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3) 기업·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 사업 참가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4)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대학 재학생 중 해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출국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3)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가구원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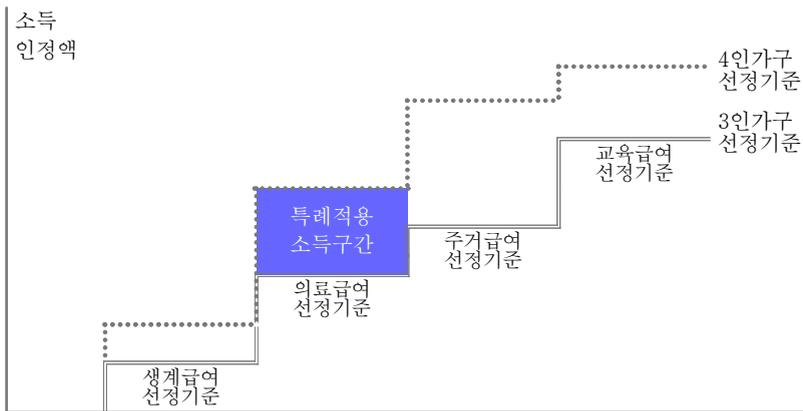


###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예를 들어, 4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1,899천원이고 3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1,548천원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00천원인 4인가구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1인이 해외인턴으로 출국하여 3인가구로 전환 시 동 특례 적용 가능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 가구의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



#### 4) 특례 운영 방법

- (1)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의 해외체류 91일 채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모든 급여에 대해 보장중지
- (2)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반영 (해외인턴 등 참가자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반영된 경우 동 소득은 제외)
- (3) 보장 가구원 수가 축소(4인→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 (3인)에 해당 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3인)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

※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의 의료급여 선정 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4) 해외인턴 등 출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에서 있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해외인턴 등 출국자를 포함하는

경우 없음 또는 미약인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여 남은 가족에게 의료급여 지급

※ 동 특례 가구는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으로 해외출국한 자가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판정되므로,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외출국자를 포함하여 별도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하기 바람

5) 특례기간 : 해당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기간 종료시점(귀국시점)까지

6)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 : 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을 제외한 남은 가구원에 의료급여 지급

- 의료급여 종별은 “의료급여사업안내” 종별 선정기준에 따름

(2) 해산·장제급여 :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7) 소득인정액 반영 방법

(1) 해외체류 정부지원금, 인턴취업 소득, 항공료·체재비(월140만원 한도) 등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교환학생 재학 중 각종 소득 : 소득산정에서 제외

(2) 입국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으로 산정

8)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 귀국 시 보장 방법

(1) 보장기관은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는 귀국 후 즉시 수급자 보장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으로도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

※ 대부분의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는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국 즉시 보장하여 보장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재 보장 실시 후, 취업여부·금융재산조회 및 공적자료 조회 등 상세조사를 통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등 결정

9) 사후관리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해당 가구의 기본정보에서 “특례구분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표시하고 특례기간 입력, 상담내역에 출국일 등 관련사항 명시
- (2) 특례적용 종료자의 귀국예정일을 확인하여 ‘귀국예정일 기준’으로 특례적용 종료
- (3) 해당 가구의 상담내역에 특례적용 종료일 명시
- (4) 기업, 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보장기관 담당자는 수급자에게 해당 인턴사업 내용(인턴사업 지원비용, 기간, 내용, 담당자 이름, 연락처 포함) 및 참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특례 적용
- (5) 특례를 적용받는 가구원(3인)의 소득인정액이 해외인턴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4인)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 3인은 그 다음 달부터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6) 특례기간 중에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의 귀국여부를 확인하고, 귀국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즉시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1) 운영 기본 원칙

-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 중인 수급자 가구가 군입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 군입대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의료급여 지급
- 동 특례수급자 가구가 군입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일반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 2) 적용가구

-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의무 이행에 준하는 입대자가 발생한 가구
  - ※ (특례적용제외자) 사관학교입영자, 장·단기하사(직업군인), 병역특례취업자, ROTC 장교 입대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대체이행자, 사회복지무원, 상근예비역

### 3)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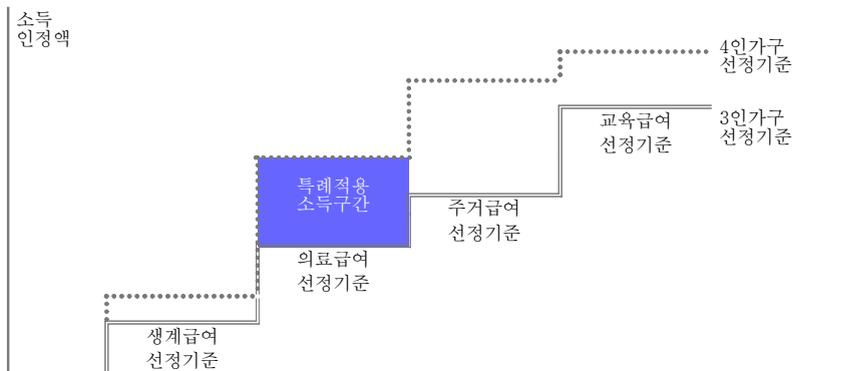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군입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예를 들어, 4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1,899천원이고 3인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1,548천원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00천원인 4인가구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1인이 군입대하여 3인가구로 전환 시 동 특례 적용

####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



### 4) 특례 운영 방법

(1) 군입대자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보장중지

(2)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그대로 반영

(3) 보장 가구원 수가 축소(4인→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 (3인)에 해당 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3인)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

※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의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 여부 결정

(4) 군입대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에서 있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 군입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없음 또는 미약인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여 남은 가족에게 의료급여 지급

※ 동 특례 가구는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군입대자가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판정되므로, 수급자 가구원에 군입대자를 포함하여 별도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

5) 특례기간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대 시부터 의무종료(제대)시 까지

6)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 : 군입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에 의료급여 지급

- 의료급여 종별은 “의료급여사업안내” 종별 선정기준에 따름

(2) 해산·장제급여 :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7) 군 전역 시 동 특례 가구의 보장방법

○ 군 전역자는 다음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를 적용하여 관리

○ 군 전역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결정

8) 사후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특례기간의 종료일을 전역예정일로 입력하고 관리

○ 특례를 적용받는 가구원(3인)의 소득인정액이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4인)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 3인은 그 다음 달 부터 동 특례를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1) 운영목적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장중지된 수급권자가 전역일에 즈음하여 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에 특이 변경 사항이 없으면 전역과 동시에 보장
- 보장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군 복무 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

## 2) 특례대상

-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군 입영한 자로, 입영 전 수급자로 보장받던 자 중 군 전역(예정)자
  - ※ 육·해·공군·해병 및 의무경찰 등 현역병과 전환복무자만 적용되고,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과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 내무생활 대상이 아닌 의무복무자는 동 특례 미적용

## 3) 특례 운영방안

- (1) 신청특례 : 군 전역(예정)자의 신청특례는 아래와 같이 적용
  - (가) 군 전역 예정자 : 전역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부터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능
    - ※ 전역예정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를 근거로 특례 적용 가능
  - (나) 군 전역자 : 일반수급자 신청절차와 동일
- (2) 조사특례 : 군 전역(예정)자가 전역과 동시에 수급자로 보장받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전역(예정)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전역(예정)자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
    - ※ 대부분의 군 전역자는 군 복무 중에는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군 전역자를 전역 즉시 보장하여 보장성 향상 도모
- (3) 보장결정 : 군 전역(예정)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
  - (가) 군 전역 예정자 : 조사가 전역일 이전에 완료되더라도 보장결정은 전역일부턴 시행



※ 군 전역 예정자가 군복무중 여러 사유 등으로 전역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전역하지 않는 경우 '신청각하' 대상으로 재신청 필요

(나) 군 전역자 : 일반수급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보장기관장이 수급자로 선정한 날이 보장결정일임

(4) 급여의 개시 : 군 전역예정자는 보장결정일이 급여개시일이고, 군 전역자는 전역 후 10일 이내 신청시 전역일을 급여개시일로, 10일 이후 신청시엔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 군 복무기간 중에는 타 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

(5) 보장후 관리 : 선 보장결정하고 금융재산 결과가 회신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장 가능한 급여의 종류를 결정하며, 은닉 금융재산 등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 사유가 차후 확인되면 선정기준을 초과한 해당 급여의 보장비용은 징수

#### 아. 가구원 출생 시 가구원 추가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 수급자가구 출생 자녀의 가구원 추가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시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별도의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전에 출생 자녀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출생일 기준으로 급여 지급)

#### 자.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 (특례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대안양육을 통해 보호되는 아동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되는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호조치된 경우

○ (적용방법) 금융재산 회신 이전이라도 공적자료만으로 대상자 책정 후 먼저 지원 하고, 나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 조치

#### 차. 기초연금 인상 특례

##### 1) 운영 기본원칙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를 동시 수급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기초 연금액 인상으로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할 경우 2년간 급여 연장 지원



- 생계급여 증지로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는 긴급복지, 지자체지원, 민간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연계
- 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

## 2) 운영기간

- 특례 운영기간은 2018.10.01.~2021.4.30.
  - '18.9월 인상시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가구('18.10.01.~'20.9.30.)
  - '19.4월 인상시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가구('19.05.01.~'21.4.30.)

## 3) 적용대상

- '18.9월('19.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18.10월('19.5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수급자
  - 가구별 기초연금 인상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기존 급여 유지 가능 대상자
- 기초연금 신청일 기준 '18.8.31.('19.3.31.) 이전 기초연금 신청자로, 기초연금 적합자로 책정된 경우 특례 적용 가능
  - ※ 사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8월 30일에 신청하여 10월 25일에 기초연금(8~10월)을 수령한 경우, 8월엔 인상 전 금액(기초생활유지), 9월~10월 인상 후 금액(기초생활탈락) 수령 하는 경우

## 4) 특례 급여내용

- (1)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기존 급여 내용 및 금액 변경 없이 유지
  - 2개 이상의 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선정기준이 낮은 상위 급여가 특례 적용될 경우 하위 급여도 특례 적용 보장
  - ※ 사례) 의료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로,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초과되나 주거급여 선정기준 45%는 초과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특례 적용 가능
- (2)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기간 중 가구원 해산 및 사망시 지급(교육급여 특례대상 제외)

## 5) 특례 간 중복적용

- 원칙적으로 타 특례와는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유리한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 다만,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의 재산범위 특례는 중복 적용 가능

## 6) 특례 적용 가구에 가구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 방법

## (1) 가구원수가 축소되는 경우(전출, 교정시설 수감, 해외이주 등)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특례 유지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면 보장유지
  - ※ 전 거주지에서 특례 수급자로 보장받던 자가 전입하는 경우, 가구원 전체 전입인 경우 특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특례를 유지할 수 있으나, 가구원 일부 전입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전입 시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맞춤형급여 체계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 단, 군입대로 가구원수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군입대자 가구 수급권자 범위특례”를 적용하여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특례 유지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 보장기간 동안 계속 보장

## (2) 가구원수가 증가하는 경우(전입, 출생, 전역, 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 등)

- 근로무능력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전입 등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특례 유지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보장유지
- 근로능력자 전입 등 : 전입자 등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였고 신고한 소득 포함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특례 유지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보장유지
- 가구원 변동가구의 특례 적용 기간은 최초 적용시점부터 2년이며 전출입에 따라 특례 보장기간이 변동되지 않음

## 7) 소득인정액 감소에 따른 일반수급자로 전환

- 특례 적용 기간 중 근로·이전 소득 등 타소득이 줄어든 경우
  - 특례 대상자에게 맞춤형급여 대상 전환 이후 특례 재 적용은 불가함을 안내하고 특례 유지와 맞춤형급여 대상 전환(일부급여만 특례유지 불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맞춤형 급여 대상으로 전환할지, 특례급여(의료, 주거, 교육)를 2년간 유지할지 선택 (이러하면 변경된 소득인정액이 지속될 경우 맞춤형 전환이, 일시적인 감소인 경우 2년간 유지할수 있는 특례급여 선택이 유리할 수 있음)

### 8) 특례 보장 중지

○ 아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보장중지를 결정한 다음날)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맞춤형급여 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1) “의료급여”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 (2) 특례를 적용받은 수급자가 향후 소득인정액이 증가 (근로·사업소득, 부양비, 사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증가) 하거나, 가구원수의 변동(전입, 전출, 사망 등)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인 경우
- (3) 특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단위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기초연금외 기준 중위소득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9) 수급자 증명 기준

○ 실제 받는 급여의 종류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기준



## 제3편 조사

- I. 조사의 개요
- II. 근로능력 판정
- III. 소득조사
- IV. 재산조사
- V. 부양의무자 조

사







## I. 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 가. 조사의 목적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 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법 제12조의2]

#### 나. 일반원칙

-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급여종류별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급여종류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월 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 2. 조사의 종류

### 가. 신청조사

#### 1)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에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법 제22조]

#### 2) 조사 대상 및 내용

-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내용 [법 제22조제1항]
  - (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조사대상여부
  - (나)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다)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라)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 3) 조사 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4) 조사결과에의 처리

-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동 거주지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신고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신고제도 및 신고시설 설치기준 등을 안내하되,
  - 미신고 시설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신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4조 및 유형별 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급(권)자에게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를 유도하여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보장하지 않도록 관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을 신청한 자의 보장 책임은 보장기관에게 있으며, 수급자가 미신고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법 제10조]”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법 제1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 등으로 거주지 이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사본을 실종아동 전문 기관에 송부하되, 신상카드의 작성·제출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

5)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확인</li> <li>-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li> </ul> </li> </ul>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li> </ul>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li> <li>-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li> </ul> </li> <li>•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li> </ul> </li> </ul>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자료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li> <li>-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li> </ul> </li> </ul>	통합조사 담당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상담을 통해 소득출처 파악</li> <li>-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li> </ul> </li> <li>•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li> </ul>	통합조사 담당
조사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li> </ul>	통합조사 담당



## 나. 확인조사

### 1) 조사의 목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 [법 제23조]

###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 3) 조사 시기

- (1) 시·군·구별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법 제23조제1항]
  -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3)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다음의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구 분	조사주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자료 변동	-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적용자	- 연 1회 (확인조사 주기 시 추가 조사 가능)
•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반기별 1회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 반기별 1회
• 대부(중개)업체 대출금 부채	- 반기별 1회 (확인조사 주기 시 추가 조사 가능)
• 조건부과 유예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그 기간 경과 시 소득조사 실시

- (4)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변동사항을 조사하되, 아래 표의 경우는 조사주기별 조사 실시

구 분	조사주기
• 부양의무자가 소명하여 소득에서 차감한 의료비 등	- 연 1회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 포함) 보장하고 있는 경우 - 부양 거부·기피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 여부	- 연1회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 가족 간의 부양기피 사유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 확인조사 제외 - 특히, 금융재산 조사대상 제외

#### 4) 시·군·구별 연간조사 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 (1) 보장기관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는 연간조사계획에 포함
- 단, 조사내용 및 조사시기는 ‘보건복지부 통보내용 및 시기’로 표시

#### (2) 연간조사 계획의 내용

##### (가)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 ①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② 수급자별 확인조사 일정

※ 특정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를 분산하여 계획수립

##### (나)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 (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라)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마)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조사위촉, 기타 조사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



(바)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등

### 5)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미신고 시설 확인 시 수급자에게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 3. 자료 제출 요구 [시행규칙 제35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종류별 보장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li> <li>※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li> </ul>
소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임금확인서</li> <li>월급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li>퇴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퇴직사실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금액증명원</li> <li>휴·폐업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 소득 파악</li> <li>※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소득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업소득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 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소득 파악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대차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급여 대상 확인</li> <li>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출실태조사표</li> <li>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파악 곤란 자에 대한 소득파악 (특히,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인 경우 징구)</li> </ul>
재산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보증금 파악</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간 부채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보증금</li> </ul>
근로능력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li> <li>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능력 판정</li> </ul>
급여계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li> </ul>

※ 주거용 이외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징구



## 4. 조사수행 주체

### 1) 조사주체

- 보장기관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담당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현장조사서(서식10호)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확인조사 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 2) 조사의 의뢰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과약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6조]
- ①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
- ②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제조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 의뢰함
- ③ 조사를 의뢰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 3) 조사의 위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확인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6조]

##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 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 [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상기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동 사실 통보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
  - ※ 단,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가 명백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이 필요한 수급권자 여부를 조사·판단하기 이전에 신청 단계에서 자료 제출 미비를 사유로 신청·접수를 거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 가.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 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보장결정 시에도 누락 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 나.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 : [법 제22조제6항]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48조제2항]

○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 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 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조사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즉시 실시

####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시만 제공	매월 (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 조사시 : 최근 3개월 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확인조사시 : 최근 6개월 자료)	매분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내역	매월	
	공공일자리 소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 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정 보(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매월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사업 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재산 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보장별 공제금*)/12	연 2회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1월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지연금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고정 : 1월 •변동 : 4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2회			
재산 일반 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매월	
	금융 재산	요구불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연 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 2회
		증권거래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등 : 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 예금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등 : 액면가액 (3) 예수금 : 잔액	연 2회
		보험증권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보험 계약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저축 해약 시 환급금	연 2회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연 2회
		자동차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부채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대출 잔액	연 2회
		신용카드 연체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 2회
	임대보증금	*국토부 임대보증금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 “\*” 표시된 항목은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그 외는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농업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 현황 ('19.12월말 기준)】

기 관 (25개)		연계정보 (80종)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3)	산재보험급여,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금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국고용정보원(5)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지급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1)	장애인입금내역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	사학퇴직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국가보훈처(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국방부	국방부(2)	군인퇴직연금급여,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병무청(1)	군복무확인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연금 기여금 정보 수신
국토 교통부	교통안전공단(3)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보유정보
	국토교통부(11)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지적정보, 전월세거래정보, 임대임차인정보, 분양권및 조합원입주권정보, 대법원전월세거래정보, 대법원임대임차인정보
		보험개발원(2)
	금융기관(1)	금융재산정보조회(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수익증권, 보험증권 등)
기획 재정부	국세청(12)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정보/임차보증금**,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소득정보, 특정시설물 이용권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연말정산사업장인원수정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
농림축산 식품부(1)	농림축산식품부(1)	농업직불금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법원행정처(4)	가족관계증명*,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법무부(9)	교정시설입소자자료, 출입국자료(변동분), 출입국자료(이력), 국내 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소년원 입출소자정보, 외국인등록정보, 복수국적자정보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2)	건강보험보수월액, 건강보험 피부양자정보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신청자 A급여(기초연금 신청자)
	사회보장정보원(2)	보육시설종사자정보, 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3)	별정우체국연금,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2)	공무원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2)	재산세, 취득세
	행정안전부(3)	주민등록사진정보, 주민정보변동, 주민등록등초본*
	경찰청(1)	실종신고 및 해제자

※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인적정보(타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G4C)를 이용한 정보 연계(15종)

\*\* 사업자등록정보와 사업자등록증명은 연계방식이 상이하여 별개로 나눔



## II. 근로능력 판정

###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시행령 제7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20년 기준 18세(2002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20년 기준 65세(195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시행령 제7조]

####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중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 실시

(3)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가)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20세(2020년 기준, 2000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마)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9-227호) 별표2의 회귀·중증난치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19-29호) 별표3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회귀·중증난치질환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회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확인
  - 신규 급여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 ※ 단,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HIV/AIDS, 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
  - 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② 북한이탈주민,    ③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 ④ 보장비용 징수제의 대상

- (1)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2)~(3)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 ①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 ②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 ①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정적 사례

- ①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 ② 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 ③ 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 ④ 세대(가구)별 간병·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3)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나) 사회복지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지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으로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은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참조

### Ⅲ. 소득조사

####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제외한 금액을 의미

#### 2. 소득평가액산정 [법 제2조제9호 및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사업장1(84백만원)+사업장2(-100백만원)=사업소득(0원)

※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 가.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수급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 (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2020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참조)으로 반영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기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소명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 그 외 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 나.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

##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3)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 (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6)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8)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9)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2)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 3)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1)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2)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5)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기능 장려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연1회 수령)

##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3)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월 17만원)

다)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3) ‘이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월20만원 지급)
- (5) 「입양특례법」제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 (6)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라)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2)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하며,
  - 기존 30%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기준 유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 자활소득 공제 및 자활장려금 지급방식은 자활사업안내 참조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5.12.31.이전출생자)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이하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지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1)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적용
  -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 재활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 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2) 25세 이상(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 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3)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다만,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 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 (4)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 (5) 65세 이상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지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공제 적용
  -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 5)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1) 1년에 6회 미만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또는 친인척의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금액
  - (2) 1년에 6회 이상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친인척 등(부양의무자 제외)의 “월별지원 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3)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4)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농어민가구 특례 64쪽 참조)
    - (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발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나)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5)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자녀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 학기~ 전전 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 단, 공제금액은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
    - ※ '20년 1학기 해당 월 : '20.3~8월 / 2학기 해당 월 : '20.9~'21.2월(기 공제 적용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이후에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따르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따른 소득파악이 우선함

#### 가. 근로소득

#####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 ※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1항1호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회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의참석과 관련한 수당으로 국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회의참석 수당규정이 없을 시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 (기타소득 과세최저 금액 125,000원))

##### 2)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 3) 조사방법

#### 가) 상시근로자 소득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가)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개인민원」-「조회발급」-「직장보험료개인별 조회」에서 신고 된 평균보수 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②-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②-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 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 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①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②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나) 일용 근로자 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 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신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금)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다) 자활근로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2)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나)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다음 금액
  - ①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 ② 취업성공수당 : 1인당 최대 150만원

③ 자립성과금 : 분기당 최대 210만원

④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50만원/월

(다)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내 공제

(3)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근로자)'의 임금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개발  
추진 중)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농산물 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 농산물 소득정보 :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기술정보」- (농산물소득가격정보)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 자료를 통해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2) 임업소득

### 가) 정의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 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3) 어업소득

## 가)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漁家)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이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4) 기타 사업소득

## 가) 정의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2개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의 소득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국세청 소득자료 보다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 순서와 동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지등록증 보유여부 및 수급자 소유사업장 피고용인 수를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 수급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시점부터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 예) 행사,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 다. 재산소득

### 1) 임대소득

#### 가) 정의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 임대소득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추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요망

### 2) 이자소득

#### 가)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
  -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24만원\*\*(이자소득 공제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 생활준비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자소득 조회결과를 반영
-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만큼 연간 최대 24만원(월2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

## 3) 연금소득

## 가) 정의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月割)하여 소득으로 적용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가) 정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나)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중 50%는 소득에서 공제. 또한,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 단, 연금누적액이 금융회사 부채(예를 들어, 계좌명이 주택연금대출 등으로 표시되는 부채)로 조회되는 경우 연금누적액이 이미 부채로서 반영되었으므로 연금누적액을 부채로 직권 재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 라. 이전소득

### 1) 사적이전소득

####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1)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2) 소득관리 방법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

(나) 보장기관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다) 확인 조사 시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

#### (3) 소득반영 비율

(가)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사적이전소득 : 전액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법 제12조의2 교육급여의 적용특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득반영 비율의 부양의무자 관계는 적용해야 함

※ 부양비가 부과되는 부양의무자가 사적이전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부과된 부양비에서 사적이전소득금액은 감액함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

## (4) 소득반영 방법

(가)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는 지원금 전액, 친인척 등은 “월별 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금”을 정기 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1~5회)의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와 친인척 등을 구분하지 않음)

-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 동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횟수는 작으나 1회 당 지원 금액이 클 경우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운영 예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 사례]

**예시**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정기후원자 A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 정기후원자 B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소득반영 비율은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므로,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아동의 월별 지원금액 총합인 정기후원금(20만원)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263,579원)이하로 사적이전소득 미만영

**예시** 2인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 중, 부양의무자 A는 2회 각각 30만원(총 60만원), 친척 B는 1회(3월) 20만원, 후원자 C는 3회(4월~6월) 각각 50만원(총 150만원) 등 총 6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 A의 2건 총 60만원은 전액반영
  - 부양의무자 외의 친척 B, 후원자 C의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15%(448,797원)를 초과하는 지 검토하여 초과시 차액 소득 반영
- 3월(20만원)은 미반영하며, 4월~6월(50만원)은 초과금액인 51,203원을 각 월별로 반영하여 51,203원 × 3월인 153,609원임
- 이에 동 수급자의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753,609원 (600,000원 + 153,609원)
- 동 수급자 가구에 부과하는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월 부과액은 반영대상 금액 753,609원을 1/12개월로 나눈 62,800원에 해당

**예시** 1인가구 수급자가 지난 1년간 부양의무자 A는 3회 각 30만원, 친인척 B는 2회(동일월) 각각 30만원, 총 5건, 150만원의 지원이 있어 5건의 지원금 중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 A의 지원금 90만원은 전액 반영
  - 친인척 B가 지난 1년 중 2건 각 30만원씩 지원한 경우 월별 금액을 합산한 60만원에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인 263,579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36,421원을 반영함
  - 반영 건수는 6회 미만이지만 반영 대상 금액이 1,236,421원 (900,000원+336,421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878,597원을 357,824원 초과하기에 초과분은 정가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이고 월평균 반영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12한 29,818원임

**예시** 부양비 20만원 부과자가 수급(권)자에게 사적이전소득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경우  
-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0만원, 부양비는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한 10만원을 각각 반영함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삭제 사례]

- 예시**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지원횟수가 6회 미만(또는 소득반영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수급자가 2020.1월에 최초 신청할 당시 조사시점인 2020.1월 기준으로 최근 1년(2019.2~2020.1)간, 2019.5월 2회, 2019.7월 1회, 2019.8월 3회, 2019.9월 2회로 총 8회의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2020.1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산정. 2019.10월 이후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던 중, 2020.6월은 최근 1년(2019.7월~2020.6월)간 지원횟수가 6회로 성립, 2020.7월은 최근 1년(2019.8월~2020.7월)간 지원횟수가 5회로 미성립하여 2020.7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 예시**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이 되어 생계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조사시점 기준 연속 3월간 계속 지원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이 되어 생계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2020.1월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2020.3월 조사 시 연속 3월(2020.1월~2020.3월)간 지원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2020.3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 예시** 부양의무자·후원자가 소득활동,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사정(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

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사월부터 삭제 가능

#### 나)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 (1) 개념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임

##### 사용대차란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 ※ 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임

- (2) 부과대상자 :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전·월세 포함)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아니거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예를 들어,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로 거주하더라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없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사용대차로 거주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아니라면 부과할 수 없음

- 즉,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동시에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를 미신청하거나 받지 않는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음

#### (3)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산정기준

- (가)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여부와 사용대차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과 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 (예시) 수급자 세대의 주민등록은 부양의무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공간이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3층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사용 대차로 판단



※ (예시) 주민등록은 주거지를 사용대차로 제공한 형제와 분리되어 있으나, 수급자가 거주하는 별채에 방 외 주방과 욕실이 없어 형제가 거주하는 본채를 이용하는 경우 부분사용대차로 판단

(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함

- ①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②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③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자

(4)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단위 : 원)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4급지 기준임대료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A×100%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 제3자 제공 전체	A×78%	73,944	81,432	97,812	111,852	116,532	136,188
• 제3자 제공 부분	A×20%	18,960	20,880	25,080	28,680	29,880	34,92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이전 가구원수 기준임대료의 10%씩 증가시키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

- 4급지 7인 기준임대료 291,000원

- 4급지 8인 기준임대료 320,000원

(7인 기준임대료 291,000원 + 7인 기준임대료의 10%인 29,100원)

- 부양의무자의 집에 사용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여 부양비가 산정되면 부양비에서 해당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액 만큼을 차감함

※ 예를 들어, 부양비가 60,000원 부과되는 수급자에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73,944원(1인 부분 사용대차)이 부과되는 경우 부양비는 0원으로 처리하고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



## 2) 부양비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
-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3)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시까지는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체 파악 요망

### 가)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9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의 금액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1)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 (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사)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2) 타 기관 연계 자료

- (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 (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 (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등
- (카)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 (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 (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하) 「석면피해 구제법」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거)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 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가)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내 공제
- (나)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
- (다) 지자체 지원 :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 동 “지자체 지원으로 확인되는 급여”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다른 점은,
    - 조례에 지급 근거가 없거나 조례로 지급 근거가 있다할지라도 지원 대상이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주민 누구나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지급 가능한 급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함
    - ※ 이·통장 등 직책수당(회의수당포함) 소득 산정시 20만원 범위내 공제 적용
- (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4) 국외기타소득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요약】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 관련)	소득공제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	×
	국가유공자	○	○	×	×
	보훈대상자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	×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	○	×	×
참전명예수당		○	△	×	×
기초연금		○	×	×	×
장애수당	장애수당	○	○	×	×
	장애이동수당 및 보호수당	○	○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	×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	×	×	×
	공무원연금급여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	×
실업급여		○	×	×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	×	×	×
	장해급여	○	×	×	×
	유족급여	○	×	×	×
	상병보상연금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	×	×	×
	진폐유족연금	○	×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	×	×	×
	간호수당	○	×	×	×
	무공영예수당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 관련)	소득공제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진폐위로금		○	×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	×	×	×
	장애연금	○	×	×	×
	간호수당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	×	×	×
	부양가족수당	○	×	×	×
	중상이부가수당	○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	○	×	×
	피부양보조금	○	○	×	×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	×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	○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
	특수식이구입비	×	○	×	×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의료비		×	○	×	×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75%)		×	○	×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	○	×	×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	×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	○	×	×	
대학생 등록금 지출		×	○	×	×

마.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조사 [법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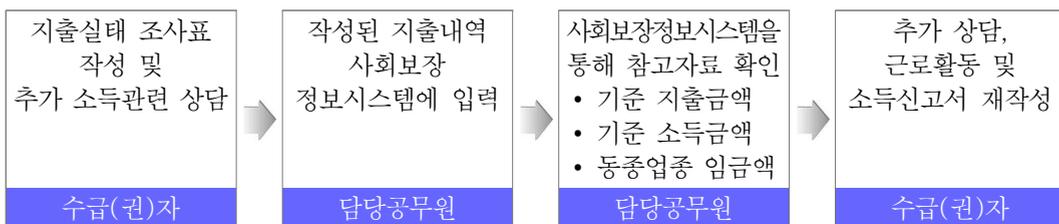
### 1) 공적자료 등으로 파악한 소득 외의 실제소득 조사

- 보장기관은 다음의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공적 자료 등으로 산정한 소득에 더할 수 있음
  -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적용 대상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근로·사업소득 등에 비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 3) 적용 절차



- 수급(권)자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고, 추가 소득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작성된 지출항목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 (서식 23호) 참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등  
참고 자료 확인
  -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  
토록 함
  -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 동종업종 소득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토록 함
- 재 신고 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어·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을 검토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참고)

#### 4)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및 안내

- 수급자에 대한 인적 특성과 월 단위 지출항목별 평균지출액(전월 기준)을 기재
- 지출실태조사표 뒷면에 기재된 지출항목 및 해당품목의 지출액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안내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가) 정의

- (1)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 신규 신청 수급권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 (1) 산정가능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급여종류별 수급자 모두)에게 산정 가능
  -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적용하여 수급자에게 (서식23호)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게 하여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미신고 소득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하고 진술하게 하며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약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 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출실태조사표, 사실조사보고서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 아래 (1)~(3)에 해당하는 ‘산정면제 대상자’가 아니면 모두가 ‘산정가능 대상자’로 판단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과유예자로 선정된 수급자
  -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기간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 다)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 (1) 소득관리 방법

-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 (2) 2020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

- 1일 68,72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 ※ '20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기준

##### (3) 산정기준

###### (가)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나)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단독가구 수급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 이상부터 산정 가능

라) 유의사항

(1) 근거 없는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에 유의
-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4호)의 장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산정되도록 유의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 조건부과 유예 기준인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8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월 9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지출이나 생활실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 산정한 소득으로, 조건부과유예사유로 보지 않음

- (3)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 (4)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성실 소득 신고 유도



## IV. 재산조사

### 1. 재산의 종류

#### 가. 일반재산

##### 1) 일반재산의 범위 (주거용재산 포함)

- (1)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2)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3)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4)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5)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6)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7) 「지방세법」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8)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9)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10)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함에 유의

## 가)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나) 적용한도

- (1)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억원 주택 보유 시

- ①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9,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을 적용
- ② 남은 주거용재산 9,000만원 중 4,2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으로 차감
- ③ 차액 4,8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을 적용 (순서에 유의)

※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

- (2) 부양의무자 : 거주여부, 적용한도 구분 없이 상기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 나.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다.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2. 재산의 조사범위[시행령 제5조의3제2항]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단,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기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는 수급(권)자 재산에 포함
  -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 ①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수급(권)자가 사용·수익하면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 ※ 미상속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하며,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 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반영함
    - ②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
    - ③ 수급(권)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 상속재산 지분율 : 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지분은 ‘1.5’, 자녀는 ‘1’ 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수급자인 배우자와 수급자가 아닌 자녀 3명이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 수급자인 배우자의 지분은 1.5/4.5에 해당함

## 3.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택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 가. 일반재산

#### 1) 주거용재산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  
- 수급(권)자가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같이 일반재산으로 처리

####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1) 정의 : 「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3)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과 별도 등기되어 있어 공적자료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 공적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① 주택과 토지가 동일 지번이고, ② 그 토지의 주택정착면적(주택의 건면적, 바닥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 따른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그 밖의 지역의 토지 : 10배
  - (나) 부속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일 경우 전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적용, 5배 이상일 경우 토지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 담당자 확인하여 추가 면적을 주거용재산 환산율로 적용할 것인지 판단
    - ※ 부속토지가 도시 또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담당자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적용 (<http://luris.molit.go.kr>)
  - (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부속토지가 인정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주거용재산 환산율(1.04%)을 적용하고, 초과면적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1) 정의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2)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률 0.95를 적용함에 유의

##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2) 조사방법

(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나)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131쪽의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1)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연장·점포·차고·창고 등



(나) 시설물(「지방세법」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 참고 :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1)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 토지 면적이 공부면적(공공문서 기록 면적)과 현황면적(실제 측량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면적 적용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 (2) 건축물(건물, 시설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3)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 &gt;&gt; 참고 : 토지가격 적용률

$$\text{토지가격} = \text{시가표준액} \div \text{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Rightarrow 1,000\text{만원} / 0.9 = 1,111\text{만원}$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面·面지역, 충주시 面·面지역, 제천시 面·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面·面지역, 진주시 面·面지역, 김해시 面·面지역, 사천시 面·面지역, 거제시 面·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 3)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 가) 정의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 수급(권)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이 확보한 임대차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된 임차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
    -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
      - ※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24세까지 산정제외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는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률}(0.95)$$

- ※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반영

## 4) 선박·항공기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의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 5) 동산

## 가)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나) 조사방법

- 가축·종묘·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여부 확인하고 건설기계 가액 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 반영(「2020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참조)
  - 각종 기계·기구류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나 TV 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분류
  -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이외 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 6) 입목재산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굴

### 나)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 7)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1)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2)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4)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5)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 8) 조합원입주권

##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 자료를 개별 장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 관리처분계획은 시군구에서 인가(승인)하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조회(스캔 등)하여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9) 분양권

##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 10) 어업권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폐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반영)

1) 정의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함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 (1) 법률상 근거 : [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 (2) 조사대상자 : 수급(권)자 가구원, 수급(권)자 가구원의 부양의무자
  -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3)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ISA계좌도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외에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 (다)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하되,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함
  - ※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액면가액)하도록 안내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예수금, 선물옵션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고 있음을 유의
-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바)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사)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 성격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예를 들어, 교통사고보험, 민간 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 >> 참조

- 수급(권)자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을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 재산으로 산정 - 2015년부터는 수급자에게도 EITC 및 CTC가 지급되기에 보장기관은 근로무능력자나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EITC를 수급하는 경우 근로활동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C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활동에 종사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 CTC란? (Child Tax Credit)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원하는 제도

#### (4)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5)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6) 조회주기 및 기준일

(가) 신청조사 : 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나) 확인조사 : 연 2회 조회 실시

(7) 유의사항

(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 제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나)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다)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따라 처벌 됨

①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②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4) 조회결과 적용

(1)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 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2)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 (나)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다)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 (1)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2)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3)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5)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나) 확인 및 반영 기준

- (1)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적용대상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2)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 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 다) 유의사항

- 수급(권)자가 기타 일시금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6)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 재산 산정에서 제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나)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1) 적용대상 : 수급(권)자만 적용,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함

(2) 적용방법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 예시】

(단위: 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례1>	2020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액을 적금하는 경우					
적금액	400	400	400	400	400	해지
공제액	400	800	1,2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사례2>	2020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적금액	200	600	600	400	400	해지
공제액	200	800 (이월한도적용)	1,400 (이월한도적용)	1,500	1,500	공제 미적용
<사례3>	2020년 10월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결정이전부터 5년만기 상품에 1,8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예금액	1,800	0	0	0	0	해지
공제액	500	1,000	1,5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 ※ 장기저축상품을 가입한 연도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3년간 연간 한도액 50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연도에 채우지 못한 연간 한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 예를 들어, 첫해에 200만원을 적금했다면 한도액 3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다음연도 한도액은 이월한도 포함 800만원이 됨. 단, 최대공제액은 1,500만원임
- ※ 장기금융저축을 해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공제적용을 하지 않으며, 해지한 예금액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시에는 자연적소비금액을 적용함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1)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미만의 자녀
- (2)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회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일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의 수령 금액 중 사용 후 잔여금액에 대한 공제는 2016년부터 삭제
  - 다만, 2015년 12월말 이전에 기적용한 경우는 계속 적용 가능

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다. 자동차(환산율 월 100%)

### 1) 정의

-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체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 3) 조회결과 적용

- (1)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조회된 자동차가 실제로는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을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 (가)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 (나)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표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 상기 말소등록증 제출 자동차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명의도용 등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적용제의 대수에 제한이 없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도 재산산정 제외 가능)
    - ※ 압류자동차,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멸실자동차, 대표자동차 등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법원의 최종확인”을 통하여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와 대표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분 요망
    - ※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 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 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단, 가구 특성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 처리할 수 있음
- (3)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표자(수급(권)자)가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이나 수급(권)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사용·수익 여부의 확인은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 (4) 자동차로 인하여 수급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지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을 적용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5)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로서 소유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산정
- 다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공동명의인이라서 1대의 자동차가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도 반영되고 동시에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도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만 반영(부양의무자 재산에서는 제외)함
  - 또한 동일 보장가구의 가구원인 둘 이상의 수급(권)자가 1대의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라서 해당 자동차가 동일 보장가구원인 각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가구원 중 한명의 가구원의 재산으로만 반영함
- ※ 공동소유자동차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애인 사용자자동차로 인정

####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장애인사용자동차

- (자동차의 범위)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또는 상이자인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생업용자동차

-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나) 상기 (가)의 ①~③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다)-(2)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과약에 철저)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 타인명의로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 장애인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1) 또는 다)-(1)에서 1대, 가)-(2) 또는 다)-(3)~(9)에서 1대
  - 일반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2) 1대 또는 다)-(3)~(9)에서 1대
- 지생보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5)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 (2대까지는 지생보 심의 불필요)
  -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8)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9)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 상기 (5)~(9)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1대인 경우(“5”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에는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 상기 (5)~(9)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 상기 (6)~(9)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권)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트,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싘타모, 깬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싘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과약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과약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0년 68,72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의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 (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 (4)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
-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교통법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8)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 (나)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 (다)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으로 표기됨
  -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야 함
    - ②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9)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개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인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나)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2)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 (10)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생보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5)~(9)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 예를 들어, 자동차 분실·도난 자동차로 ‘차량도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1) 정의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text{기타 산정되는 재산} = \text{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text{타 재산 증가분} + \text{본인 소비분} + \text{자연적 소비금액})$$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2) 조사방법

가) 재산가액 산정 기준

(1) 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재산 항목	산정 기준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재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며 실거래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음에 유의  
 ※ 일반(주거용)재산, 자동차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일반”으로 입력하고, 금융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금융”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2)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재산청시 동 지원금 중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3)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증여(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증여로 봄)하여, 증여한 재산이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됨과 동시에 증여받은 재산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가액에서, 증여한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반영함
- 단,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처분(매매 등)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도 반영하며 차감반영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만 반영하며, 처분하는 경우 위와 동일기준 적용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 (1) 월 4.17% 적용 대상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자동차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 (2) 월 6.26% 적용 대상 :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다) 타 재산 증가분 확인

(1)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시 “타재산구입(임차보증금 포함)”으로 선택 입력

- (2)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에 소요된 금액(구입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 (3)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 예를 들어,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수급자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5천만원인 주택을 싼거래가 6천만원에 처분하고, 처분금액 중 3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1천만원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나머지 2천만원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은 1천만원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5천만원 - 타 재산 증가분(전세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1천만원)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개인간부채의 상환은 타 재산 증가분 적용 불가

#### 라) 본인소비분 확인

-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2)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 (3)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사실만으로는 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4)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배당표 등을 통해 확인된 처분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5)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6) (부양의무자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재산

-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의료비·생활비 등 지출액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공제하고, 동 공제된 지원금은 수급(권)자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며 일시지원금이 수급자의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될 때 재산으로 반영
- ※ 증빙서류 :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마)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1)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매월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2) 경과 개월 수 :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며

- 금융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을 확인하여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되,
-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 대한 최근 조사일자의 '조회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차감

(3) 차감액

(가) 수급(권)자 가구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므로 반드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5. 부채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 1) 정의

-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 금융회사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조회),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fa.or.kr>/등록업체조회)에서 조회

##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 가) 부채의 종류

-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2) 금융회사 대출금
-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4)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가) 공공기관 대출금

-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신용회복지원이 적용되면 채무원금의 일부와 연체이자 전액이 감면되며, 기초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채무원금이 추가 감면되므로 캠코에서 인수한 수급자는 실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부채로 차감 필요

(라) 한국해비타트(사)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 (유의) 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5)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6)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 공정증서 확인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나)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다)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1) 의료비부채 : 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2)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3) 주거부채 : 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4) 일반부채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3) 조사방법

## (1) 임대보증금 부채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금융재산 증가 또는 타 목적으로 기지출 여부 등 현재 보유상태를 파악
-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타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유의사항 : 수급(권)자가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또는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 시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 ※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보유(구입)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주택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전액 입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2천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 확인으로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2천만원도 산정
  - 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전액 전환되었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없음
-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15백만원은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고, 1천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4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부채상환금액 15백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부채상환) 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천만원은 본인 소비분으로 차감하며, 잔액 5백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으로 산정
  -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2) 금융회사 등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회사 등의 대출내역 확인
- 금융회사 등 대출금 중 대부(중개)업체의 대출 정보는 현재 정보 미연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및 6개월 단위로 대출내역 변동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그 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되고 용도가 확인되는 부채는 부채증명서와 필요시 사용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반영

※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참조

(3)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이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회사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단, 대부(중개)업체의 대출내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상자에게 증명 요구)
- 제공내역
  - 금융회사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차감 가능하며, 기업대출은 차감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토록 연계 확대

4)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5)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 (1)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 (2)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담보설정액은 실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 됨)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최고금액 등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실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 (3)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4)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
-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 신용회복위원회는 수급자에게 부채를 빌려준 채권기관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해준 수급자의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함,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한 부채는 원 채권기관인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 부채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 (6)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 부채의 용도 확인 운영방법 개선

-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등 금융회사 부채 중에서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나
  - ① 2014년부터 개인 간 부채를 전면적으로 차감하지 않음(법원 확인 사채 제외)
  - ② 채무 부담행위가 있음에도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로 차감하지 않는 안정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③ 보장신청 이전에 재산을 담보로 부채를 얻어 이를 매달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 생활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
  - ④ 보장신청 이전에 수급자가 될 목적으로 필요 없는 부채를 이자 부담하면서 얻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곤란 등의 문제를 수급(권)자에게만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부채는 용도의 확인 없이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보장기관이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 그렇게 판단하게 된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부채차감 여부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 (1) 용도확인이 필요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을 얻어 기존 보유재산 1천만원을 합하여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하고, 1천만원은 부채로 차감
- (2)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의 부채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가)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대부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 (나)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
  - (다) 그동안의 생활실태를 보아 부채의 필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수준과 재산에 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 등
    - ※ 일반적으로 부채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사업 투자를 위하여, 단기간의 건강악화·실직·폐업 등으로 근로·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비의 부족으로 부채를 얻는 것을 고려 시,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산과 소득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는 그 부채를 얻은 이유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 (3) 부채의 용도를 채무자(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포함)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이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 ② 사실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부채의 차감여부 결정 건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재산가액에서 해당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 (4)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 부채는 이미 재산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중 공제에 해당

## 6.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가. 기본재산액

#### 가)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나)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 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다)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2)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예시1**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4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 ①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 ②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
- ③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5,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예시2**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6,500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원인 일반재산환산율이 적용되는 영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 ①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인 6,500만원을 공제하고 4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② 평가액 1,000만원의 자동차는 영업용 자동차로 평가액의 50%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므로 500만원만 반영대상이고, 기본재산으로 추가 공제 가능액은 400만원이므로 차액 100만원만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4.17% 반영

##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 가) 주거용재산

○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 환산율 완화

나)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151쪽 다)-(1)~(10)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도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에서 차감 가능

다)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라)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수급(권)자가 재산가액에서 차감 또는 감면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 1대에 한하여 배기량 및 기종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률)과 다르며, 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역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권)자로 선정 보장되는 문제 발생
- ※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는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은 2년 이내 소진하는 것을 산정하여  $4.17\% \times 24\text{개월} = 100\%$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보장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다.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 동 특례조항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모두 적용됨
- 동 특례조항은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 동 특례조항은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가구의 소득에 반영 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기준 적용
- 아래 1), 2), 3) 항목 적용자는 보장기관장의 확인만으로 특례적용, 4)번 적용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특례 적용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지침 94쪽 참조)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 (2)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재산가액 기본조건			추가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0,000만원 이내	7,300만원 이내	6,6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재산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이내</li> <li>*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li> <li>•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li> </ul>
의료급여	8,500만원 이내	6,5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 ※ 동 규정은 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을 인상(예를 들어, 대도시 6,900만원에서 1억원까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보장성 향상에 기여
- ※ 동 규정의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 (1)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2)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경우란
  -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 (3)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재산가액 기본조건			추가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0,000만원 이내	7,300만원 이내	6,6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재산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이내</li> <li>*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li> <li>•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li> </ul>
의료급여	8,500만원 이내	6,5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 ※ 동 규정의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 3)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 상기 1) 또는 2)를 적용받는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 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자로 3년간 추가보장 가능

###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특정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 가구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특정 재산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 (가)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할 수 있음
    - (다) 특례 적용 후 부과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없이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라)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통 적용

### 5) 유의사항

#### (1) 차감순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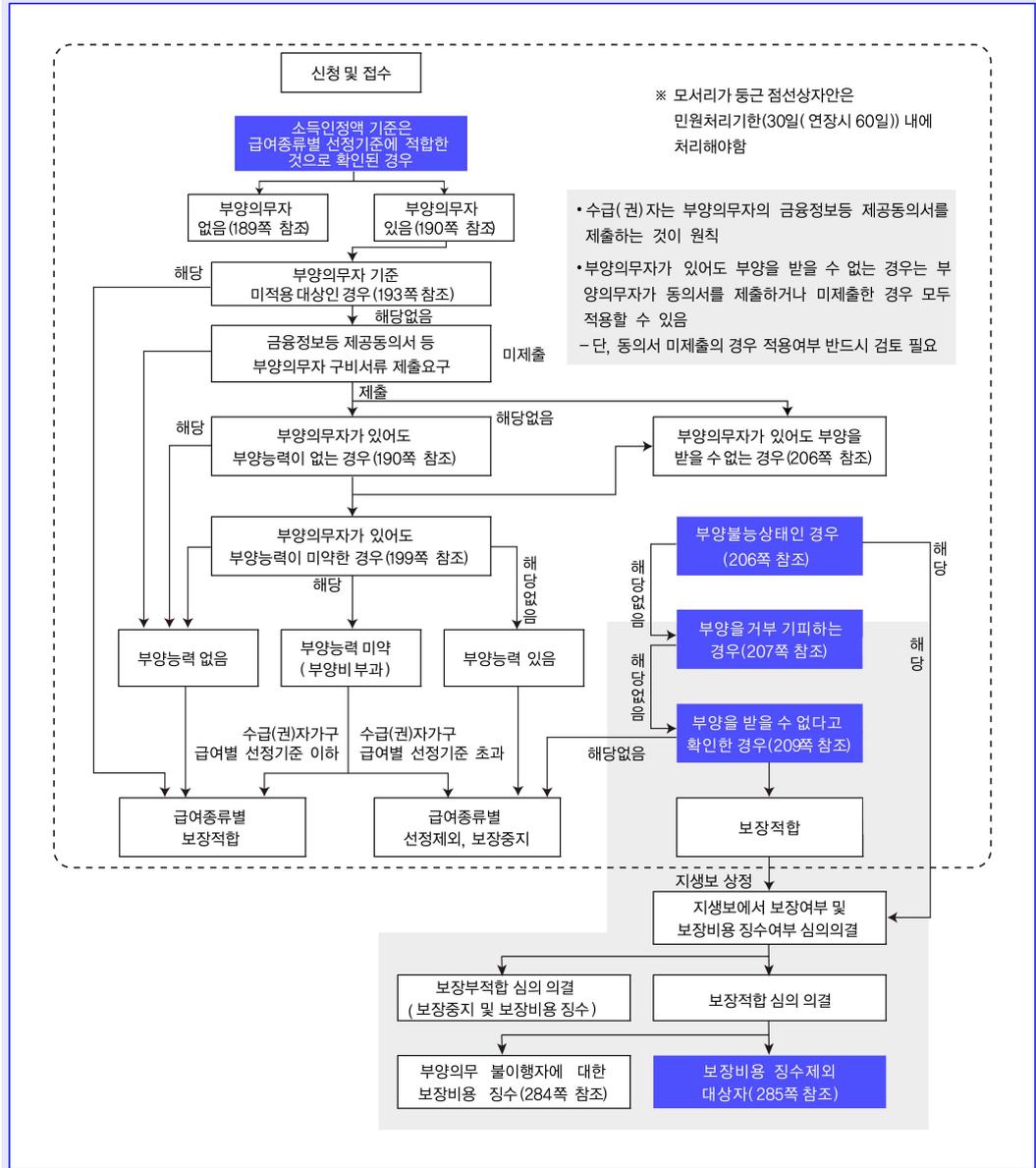
- (가)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
  -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 7,300만원, 농어촌 6,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할 수 없음. 동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용해야 함
- ※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대도시는 1억, 중소도시 7,300만원, 농어촌 6,6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다) 2)~4)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 재산에서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 (2)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



## V. 부양의무자 조사

### >> 참조 : 부양의무자 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 1.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및 조사 내용

### 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법 제12조의2]

### 나.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부양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 2. 조사순서

### 가. 부양의무자의 유무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보장가구에 속하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부양의무자에게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산정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 ※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

>>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동반 해외출입국 내역, 건강 보험공단의 피부양 정보 및 국세청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한다고 주장함에도,
    - 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 ②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 ③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 및 부양 거부·기피에 대한 관계자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단, 동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양 거부·기피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유	증빙자료
군복무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복역	-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행방불명	- 거주불명등록 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증빙함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정리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 ※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 라. 부양능력의 확인

-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경우이거나 수급자인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조사
-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모두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 접근 가능한 공부를 이용 : 재산·소득 순 조사
  -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시 특히,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당 여부 조사
    - ※ 부양의무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안하여 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사실 보완 조사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 부양여부를 조사

## 마.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1) 처리 원칙

- (1) 부양 거부·기피 등을 주장하며 부양의무자가 자료 및 정보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는 미 징수 가능하되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는 조회 실시
- (2)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명서와 사실조사보고서 및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보장 여부 결정
- (3)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악의적으로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되 보장비용은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징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4) 수급(권)자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지침 209쪽)이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는 보장실시



## 2) 조사 및 자료 제출 등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조사 상 필요한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지출실태조사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특히,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에게 실제소득에서 차감·제외하는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단,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양거부·기피라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기존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여부를 결정

-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방안
  1.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여부를 조사하여 부양관계 해체를 위한 지생보 상정 검토
  2. 수급신청 가구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지원을 위한 지생보 상정 검토(지침 209쪽 참조)

### 가) 조사 내용

(1)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소명내용 및 타당성 여부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례 지침 206~212쪽 참조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나) 조사방법 -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참조

(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정된 경우의,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 해외출입국 내역,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 국세청 연말정산 정보에 수급(권)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재한 여부

※ 단, 동 자료는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자료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4) 담당자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실조사내용 등

※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삭제되었음에 유의

## 나) 조사 방법

- (1)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 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되, 소명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인 경우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판단 가능  
단, 수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 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탈 시설 수급자에 공통 적용)
-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 우선적으로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지 수급(권)자와의 상담 등으로 판단을 하고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여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생략
- (가) 과거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기출, 학대, 약물중독, 미혼출산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공문 송부 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나)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또는 공문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유선(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요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를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

## 수급(권)자 제출자료

## ■ 기본자료

- ① 소명서(수급(권)자 작성)
- ② 사실조사보고서(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 작성)
- ③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공부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 ④ 지출실태조사표
- ⑤ 최근 1년간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  
\* 부정수급 신고 등 추가 확인 필요시 1년이상 통장 입출금내역 추가자료 요구가능

## ■ 추가자료(담당자 판단)

- ① 부양기피사유서(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 요청, 부양의무자 작성)
- ② 기출(실종)신고서,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및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신청서 등 부양거부·기피·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3) 우선적으로 기본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기본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자료 제출 생략)
- (4) 추가자료는 기본자료 만으로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출

다) 사후관리

- (1) 확인조사 시 보장기관이 부양거부·기피로 확인(인정)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조사를 제외하되,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확인된 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부양거부·기피를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할 것
- (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소명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
- (3) 특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 수급자가 그 부양의무자와 동반 해외 출입국을 하였거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경우임에도
  - 지속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면 그 타당성에 대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명을 기록 관리 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보고서로 그렇게 판단한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 미약 포함)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급(권)자 결정통지시,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에게도 서면 통지
  - ※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284쪽) 참조

###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 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 산정

- (1)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 (2)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직계비속에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34세 이하인 경우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포함, 34세 초과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대학생인 경우 포함
  -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34세 초과하는 근로능력 있는 자녀는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동 자녀의 자녀(부양의무자의 손자녀)는 34세 이하라도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산정
  - ※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 하여도 남편 가구의 가구원수로 산정(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동일)
  - ※ 부양의무자가 동일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만 각각 포함 가능

#### ○ 거주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는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34세 이하, 34세 초과 근로무능력자·대학생)에는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해당 가구의 소명 및 증빙자료(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를 토대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
  - ※ (예시) 장애인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노인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 (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 산정
  -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이 4인인 가구에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 2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는 4인이 아니라 6인으로 산정함



##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조사대상이 아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개념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을 적용한 후의 소득액 대해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을 판정하는 소득임

$$\text{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text{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text{차감·제외항목 반영}$$

- 법적근거[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 1)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나) 근로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 (1)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기업), 공공근로,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2)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다)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포함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및 각종 수당

-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및 각종 수당
- (2) 저소득층 복지급여
- (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 (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3) 가구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
- (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위로금
  -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 (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사) 「석면피해 구제법」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차)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 (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직업훈련수당
- (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하)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발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4) 보육·교육비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5) 지자체 지원 금액
  - (가)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 (나) 보훈대상자·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2)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 가)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 (1)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

- ①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교육비 공제액을 표준화하여 적용
- ②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공제는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보장기관의 확인결과 해당 연령대 가구원이 초·중·고등학교에 미재학하거나 조기입학·휴학 등으로 해당 연령대 학교와 다른 학교 재학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 확인한 달부터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실제 재학 중인 학교에 해당하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함
- ③ 부양의무자 가구원 교육비 표준공제의 주기는 학기제와 동일하게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1년으로 함
- ④ 아래 공제액은 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 통해 아래 금액 이상의 정규 교육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경우(기 반영된 가구 포함)에는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가구 자녀 1인당 학교급별 교육비 표준 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년 표준공제금액	195천원	205천원	231천원

※ 통계청의 2016년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중 5~6분위 가구의 자녀 1인당 초·중·고 교육비 등 평균지출 현황 반영

(2) 대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

※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와 같이 대학생 학비 차감 주기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1년이며, 2학기제일 경우 학기당 납부영수증을 제출받아 인정 가능

(3)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학생이 포함된 가구의 학생의 기숙사비, 월세비용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공제 방식은 학비 공제방식 준용)

※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20년 266천원) 상한 범위내에서 실비공제

(4) 의료비 및 간병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간병기관,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가구원에 대한 간병비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

-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 개관적 증빙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불인정



- (5)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 등
  - 동 지출 비용은 기구 및 용구의 구입 월부터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기간까지를 총 구매금액에서 나는 값으로 차감 가능하므로 내구연한이 없는 용구는 차감 불가
  - ※ '18. 7월에 내구연한이 2년인 전동 휠체어를 부양의무자가 본인부담 100만원에 구입한 경우, '18. 7월부터 '20. 6월 까지 2년간 매월 41,667원(100만원/24개월)씩 소득에서 차감
- (6)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 부양의무자 가구원 및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는 요양기관 이용료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생활시설 유료·실비 이용료

나)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 (1)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2)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의 이용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 필요
- (3)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를 들어,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 (4)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된 양육비 지원액
  - ※ 단, 부양능력 미약으로 부양비 부과 대상자의 경우 소득 공제와 부양비 공제 중 유리한 공제 선택 적용(중복 적용하지 않음)하며, 3개월 이상 지원하는 경우 적용
- (5) 채무변제액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 단,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차감하지 않음

(6)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부양의무자인 청년(34세 이하)이 본인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전월 실제 변제액 중 1인가구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의 금액

(7) 압류소득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50만원임

(8)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월세에 한정 함

①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인 경우

②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인 경우

③ 월세 납부액을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

※ 계좌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계좌이체로 변경한 이후부터 인정하며,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반영

(나) 월세 공제액 : 아래의 월세 공제 상한액까지 차감 가능하며 월세 납부액이 공제 상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납부액을 차감

**【부양의무자 가구 월세 공제 상한액】**

(단위 : 원)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 1급지 : 서울특별시,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 :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세종시, 4급지 : 그 외 지역

(9) 농어민가구 특례인정 항목 : 부양의무자가 농어민인 경우 농어민인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농어민가구 특례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아래 지출분을 차감

(가) 농어민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나)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



### 3) 부양능력판정 소득 반영 방법

○ 2)의 교육·의료비 및 필수 지출비용 등은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소득에서 차감

※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지출 비용도 포함

### 라.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 (1) 기본재산액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2)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 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3) 부채 : 수급(권)자의 부채차감 규정과 동일한 방식 적용

(4) 기타 사항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500만원) 공제

※ 장기저축금액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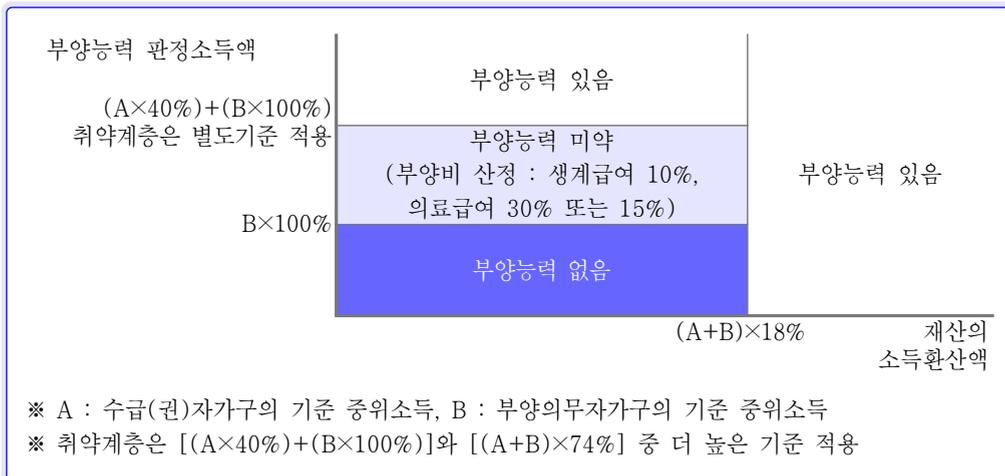
(5) 부양의무자가 농어민인 경우 : 농지법 제2조에 따라 농지 중 직접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

#### 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가.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6]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부양비 부과 없이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각 급여 수급자로 선정
  -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부양비 부과 없이 선정 가능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능력 판정 기본 개념】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2) 부양능력 미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 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 : 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40%)+(B×100%)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3)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 : (A×40%)+(B×100%)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 : (A+B)×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능력 있음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는 생계·의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 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부양능력 판정 유형	부양비부과율	해당쪽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189	
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0%	189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189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90	
가)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0%	190	
나)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		190	
다)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191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191	
마)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192	
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194	
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194	
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194	
자)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196	
차)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197	
카)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197	
타)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 된 부양의무자		198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199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0%	199
(1)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199		
(2)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20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201		
(4)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202		
나) 생계급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 대상자	10%	201	
다) 부양비 부과(15%) 대상 부양의무자	의료(15%)	201	
(1)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201	
(2)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202	
(3)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202	
(4)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203		
라) 부양비 부과(30%) 대상 부양의무자	의료(30%)	204	
(1)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204	
(2)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204		
마)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의료 (15% 또는 30%)	205	



부양능력 판정 유형	부양비부과율	해당쪽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0%	206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206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07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209
라)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212
마)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212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이 없는 경우
- (2)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가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 (3)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법 제2조제5호]
  -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4)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 (「민법」 제908조의2에서 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 하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로 확인
- (5)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 (6)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인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은 동일보장가구원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외국인이므로 수급자의 보장 가구원으로 포함불가)
  - 적용 예시 : 외국국적 교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국국적의 직계 존·비속이 있더라도 동 직계 존·비속은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로 처리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가)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나)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1) 타 부양 이행 적용대상

(가)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고시에 위임)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 \*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
- ※ (유의사항) 종전 규정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로 기 적용하여 보장중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 해당 직계비속이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수급자의 보장기간 중 계속 동 조항 적용 가능
  - 해당 수급자가 보장중지 된 후 재 보장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2) 타 부양 이행의 조건

(가)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본인명의로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에서 부양을 행하고 있어야 함

(나) 소득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의 “부양능력 있음”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다)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40% 미만이어야 함  
 ※ (부양의무자 재산-기본재산액 2배) ⇒ 남은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0%
- (라)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의 소득평가액은 직계 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함
- (3) 상기 조건 충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동 조항 적용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4) 보장기관 유의사항 : 동 조항 적용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중인 직계존속 및 중증장애인의 사망·전출 등 사항을 정기 확인

다)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 (1)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6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 (1)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수급(권)자 가구 특성은 제한하지 않음)
  - (가) 취·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가 만 18세가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만 34세 이하(만 35세 생일이 속한달의 이전달) 까지 적용하되,(\*만 35세부터는 남은 기한이 있더라도 적용 중단)  
 ※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기준을 적용하여 2018.1.1.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3년 적용기한 종료 시까지는 계속 적용 가능)
  - (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지침 46쪽 참조)로 부양의무자로 분류된 취·창업 중인 부양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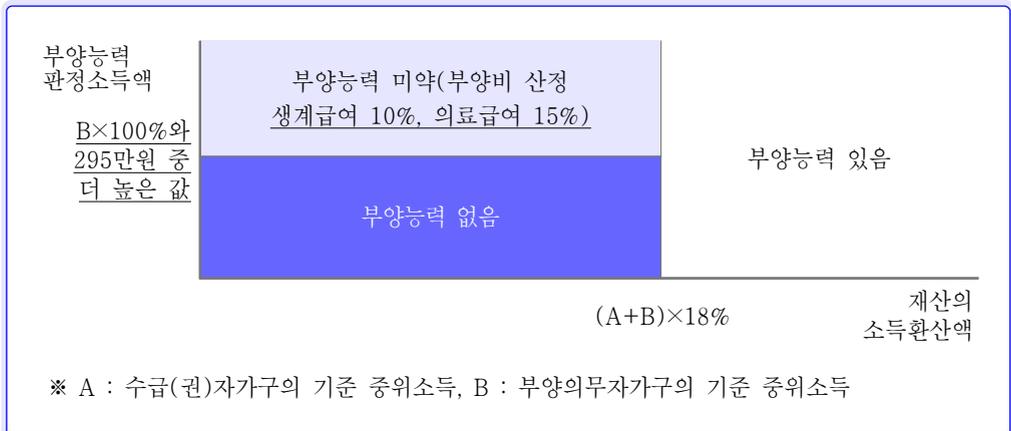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295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와 295만원 중 더 높은 값
- ※ '20년 기준 295만원은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수급자인 부모 2인을 부양(기준중위소득 40% 수준)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A×40%)+(B×100%)]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기준 충족

-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마)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소득·재산·가구특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50% 미만

- ※ 동 특례 적용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값은 지침 218쪽 참조



- (3) 가구특성 (아래 두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
  - (가)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나) 부양의무자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개별가구원을 포함하여 가구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4)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재산기준 특례를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적용을 받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소득과 재산형태·구성에 변화가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재산기준 특례 부양의무자로 계속 인정 가능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40%)+(B×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A+B)×18%	(A+B)×5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된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 (1) 적용대상 요건(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을 동시 충족 필요)
- (가) 수급(권)자 가구 요건
-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
- (나) 부양의무자 가구 요건(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2)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적용
- 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1) 적용대상 요건(수급(권)자 가구 특성 고려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가구 요건(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 아동
- (2)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적용
- 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1) 적용대상 요건(수급(권)자 가구 특성 고려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가구 요건(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2)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공 통 기 준

(1) 부양의무자 서류 징구 및 조사 여부

- 수급가구의 한부모가구, 부양의무가구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자격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격 사전 신청 안내
- 적용대상 요건 충족시, 해당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최초 급여신청 시 조사 대상에서 제외 및 부양의무자 관계 서류도 미징구
- ※ 최초 급여신청 시 수급자가 향후 급여 일시정지 및 부양의무자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안내 청취 후 해당 부양의무자의 서류를 미리 제출 시에는 접수 후 시스템 등록 가능(소득·재산 조사는 재조사 사유 발생 시까지 미실시)
- 다만,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 급여 외의 다른 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징구
- ※ 통합신청자와 생계급여 개별 신청자를 구분하여 부양의무자 적용여부 및 서류 제출 여부 상세 안내 필요 (ex, 부양의무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의료급여 수급도 같이 신청한 경우)
- 생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 부양의무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불필요한 급여까지 각하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2) 적용대상 요건 소멸 시 급여의 중지

- 적용대상 요건 소멸 시에는 급여가 자동으로 정지되며, 보장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수급자에게 일시정지 급여의 종류, 일시정지 사유, 부양의무자 관계 서류 제출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 ※ 적용대상 요건 소멸 : (수급자 가구) 노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의 보장가구원 제외, 장애정도 하향조정,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가구원 제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정지·수급자격 상실(소멸), 장애등급 하향조정 등
- 중지결정일로부터 30일(부양의무자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등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급여재개(일시정지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 포함) 여부 결정

(3) 적용시점

- 적용대상 요건이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

■ 예시

- A 수급자 가구는 (가) 요건을 충족하나 B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양비 제외 시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의료·주거급여만 보장 받던 중, B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1명이 '20.2.25일자로 기초연금 지급 결정되면 A 수급자 가구에 2월분 생계급여 소급지급 가능

## (4) 유의사항

- ① 향후 적용 대상 요건의 소멸 시에는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급여 일시정지 후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재개 여부가 결정됨을 충분히 사전 안내
-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나 대상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다른 부양의무자 완화 사항을 적용함(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 수 추가 산정,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부양비 산정 제외 등)
- ③ 기존 수급자 중 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적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특례로 보호 중인 경우 등)에는 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미적용

## ■ 예시

-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가구로서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 전체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나 손자녀 가구는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특례 요건(42쪽)을 충족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 받던 중, 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적용으로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조부모 포함 소득인정액 산정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손자녀 가구가 기존 급여별 수급자격을 탈락하는 경우에는 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별도가구로 계속 보장

- 다만, 보장 가구의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탈락한 후에 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미적용)도 가능

## ④ 부양의무자의 지원으로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

- 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적용 수급(권)자가 조사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하여 이전 3개월(연속) 이상 부양의무자의 지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즉시 삭제(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에 따른 사정변경을 고려)

## ■ 예시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던 중, 해당 수급(권)자가 '20년 2월부터 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적용받게 되어 당월부터 지원을 중단하였다면, '20.2월~4월(연속 3월)간 계속 지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20.4월부터 해당 사적이전소득 삭제 가능(이후에도 부양의무자 지원사실 확인 시에는 사적이전소득 산정 가능)

## 자)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1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차)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나목]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

- 단,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일용근로 소득 등이 주 소득원인 경우에 한함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6호에 따른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국세청 일용소득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일용근로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장기관의 확인 필요

(2)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 구(B)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카)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2항제1호]

(1) 적용대상

(가)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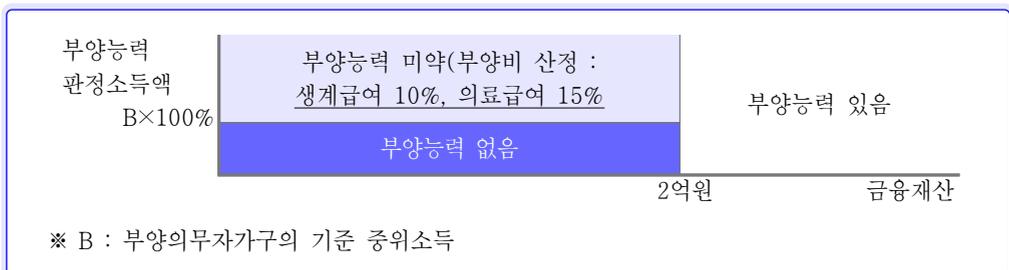
(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3) 금융재산 기준 :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500만원)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는 공제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만 적용하므로 미적용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혼인한 딸 등)】



- 타)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 된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2항제2호]
- (1)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에 반영되는 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2) 적용기준 :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하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적용
    - ※ 가구원 수가 4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2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
  - (3) 소득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B)에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수(+)를 합한 가구원수(B+)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중증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100%
  - (4) 재산기준 : 수급권자(A) 및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수를 합한 가구원수(B+)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유형에 따른 각각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미만
  - (5) 유의사항 :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하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양능력 미약 또는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양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모든 가구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고시에 위임)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 \*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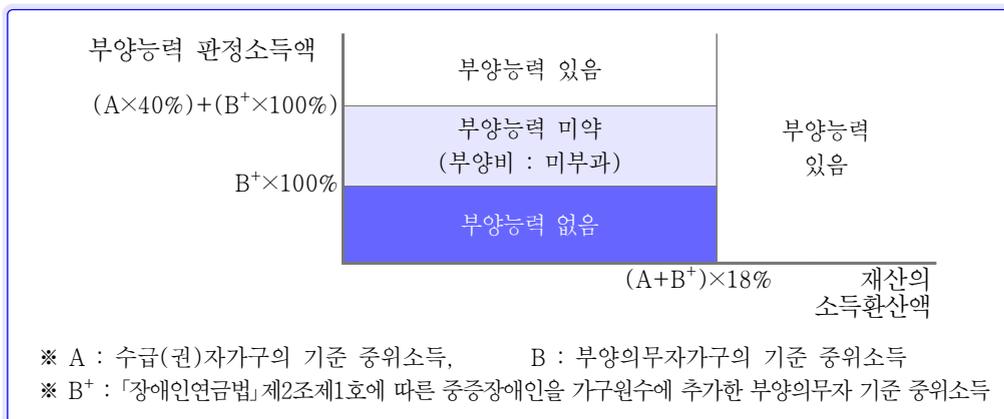
(2)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 대상 :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그 중 한쪽에 대한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음
  -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각각 수급(권)자인 경우이면서 그 자녀가 부양능력 미약인 경우의 부양비는
- 부모 중 부양비가 부과되어도 보장이 유리한 한쪽(부 또는 모)에게만 부과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 대상 : 하나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2인인 경우라도, 부양의무자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이준(별도기술)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부양비 부과를 제외함
  - ※ 부양능력미약 구간인 4인가구(아들, 며느리, 자2) 부양의무자 가구의 며느리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동 가구는 부양비부과 제외
  - ※ 기존 대상자는 그대로 인정하며, 별도 의학적 기준 충족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에 표기됨
- 동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더하여 부양능력 판정하고, 이때 부양비가 발생하더라도 부양비 부과를 제외함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4)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이혼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수급(권)자가 아닌 직계비속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양육비 지원액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부양비 부과를 제외하고, 양육비가 부양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양비로 부과
- 단, 직계비속이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대학생 또는 보장기관이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나) 생계급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부과
  - ※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10%
  - ※ 다만,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295만원 중 더 높은 값)×10%

다)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
  - ※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15%
  - ※ 다만,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295만원 중 더 높은 값)×15%

(1)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가) 대상

- ①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인 경우
- ②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나)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상

-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단, 부양비 부과로 부양비를 포함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장 중지

(다)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 시는 생활준비금(500만원)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를 공제

(2)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가) 수급(권)자 가구 특성 :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나)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

① 취·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가 만 18세가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만 34세 이하(만 35세 생일이 속한달의 이전달) 까지 적용

②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로 부양의무자로 분류된 취·창업 중인 부양의무자

(다) 소득기준 : 취업자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295만원 중 더 높은 값 이상

-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의 두 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B \times 100\%$ 와 295만원 중 더 높은 값  $\leq$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20년 기준 295만원은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수급자인 부모 2인을 부양(기준중위 소득 40% 수준)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A \times 40\%) + (B \times 100\%)$ )

(라)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times 18\%$

(3)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가) 적용대상 (아래 두 조건 모두 충족)

- ①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부부인 경우 한쪽이 노인이면 해당)
- ② 수급(권)자 가구원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된 경우



(나)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 74% 미만인 경우 값과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  $B \times 100\% \leq \text{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B) \times 74\%$ 와  $(A \times 40\%) + (B \times 100\%)$  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다)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times 18\%$

(4)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가) 적용대상

- ①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재혼한 부모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재혼한 직계존속인 부모로, 재혼한 배우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계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 : 등록장애인, 20세 미만 중고교재학생, 대학생,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 동 부양의무자는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비속 양육의 의무가 있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의 자녀인 수급(권)자도 양육할 의무가 있기에 부양 기준을 달리 적용함
- ② 배우자가 실종 등 상태인 며느리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배우자(수급(권)자의 아들)가 실종·가출·행방불명 등 된 며느리인 경우  
 ※ 배우자의 실종·가출·행방불명 등 여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판정 기준과 동일

(나)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 74% 미만인 경우 값과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  $B \times 100\% \leq \text{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B) \times 74\%$ 와  $(A \times 40\%) + (B \times 100\%)$  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다)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times 18\%$

## 라)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가) 대상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 부양의무자가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와 “다)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부양비 부과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다)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00%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미만인 경우

$$\ast B \times 100\% \leq \text{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 \times 40\%) + (B \times 100\%)$$

(라)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ast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times 18\%$$

## (2)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 (가) 적용대상인 수급(권)자 가구

① 노인가구 :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

②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③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④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가구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가구

(나) 부양비 부과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다)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 소득 100%를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ast B \times 100\% \leq \text{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B) \times 74\% \text{와 } (A \times 40\%) + (B \times 100\%) \text{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라)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마) (의료급여)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1) 제도 도입 사유 :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각각 부양능력이 있음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라도 한쪽 수급(권)자에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부양비를 차감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으로 다른 한쪽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양능력 미약 또는 없음 구간에 해당하면 다른 한쪽 수급(권)자는 보장하기 위함

※ 동 규정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복수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고 있음을 보장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준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복수의 수급(권)자 중 누구를 보장할 것인지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결정

(2) 제도 운영 방안 : 동 규정은 복수의 수급자가 모두 일반(시설 포함)적인 급여종류별 수급자인 경우 적용하며 한 가구의 수급자라도 별도가구 보장, 재산 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양쪽 수급자에 모두 있음(또는 한쪽에는 미약)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재산기준이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3) 적용대상

(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인 가구가 한쪽 수급(권)자에게는 부양능력있음에 해당되나, 다른 한쪽 수급(권)자에게는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C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수준이 수급자 A(부모 등)에게는 부양비 30% 부과 시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 B(처의부모 등)에게는 부양비 15% 부과 시 부양능력 미약인 경우

- ① A에 대하여 부양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인 A가구는 보장중지 처리, ② 부양의무자가 A에게 실제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B에게 부과된 부양비에서 차감, ③ A에 대한 실제 지원금이 B의 부양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B에 대한 부양비 부과는 제외하고 적은 경우에는 차액 부과

(나)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를 지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수급(권)자 두 가구에 모두 부양능력있음에 해당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이혼한 부와 모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양쪽에 모두 있음에 해당하는 자녀인 경우
- ① 부(또는 모)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있음에 해당하므로 보장중지, ②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a)에서 보장중지 되는 부(또는 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b)를 차감, ③ 그 차액(ab)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 시 모(또는 부)에 대해서도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면 모(또는 부)도 보장중지, ④ 그 차액(ab)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 시 모(또는 부)에 대해서는 부양능력 미약 또는 없음에 해당하면 그 차액(ab)을 기준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없음은 미부과)하고 모(또는 부)는 보장 실시
- ※ 부(또는 모)의 가구원에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 관계인 계모(부)는 포함, 이복형제가 부(또는 모)와 생계·주거를 같이하여도 제외
- 또한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인 복수의 자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능력이 양쪽에 모두 있음에 해당하는 부모, 본인 부모와 본인 자녀가 각각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능력이 양쪽에 모두 있음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등도 적용 가능함

※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요약)

구분	수급자 A	수급자 B	적용 방안
각 수급자에 대한 부양능력 정도	있음	있음	A(B) 가구는 보장중지, 나머지 B(A) 가구에는 A(B)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40%를 차감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적용
	있음	미약	부양능력 있음인 가구는 보장중지, 부양의무자가 보장중지 되는 가구에 실제 지원하는 금액을 나머지 가구에 대한 부양비에서 차감
	미약	있음	
	미약	미약	A, B 가구 중 한쪽 가구에만 부양비 산정

####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

#####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1)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

※ 사관생도, 부사관·위관이상(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 대체 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

#####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기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기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지생보 심의)

- (1)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가)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나)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다) 장애인·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 가능. 단, 수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만으로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2)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가족관계 “단절” → “해체” 용어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인정)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기능 작동여부 등의 판단이라는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음
- 이전 지침에서 사용한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의 의미가 용어의 경직성으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정서적·경제적 지지 등)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능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 부양의무자와 1~2회의 전화연락 또는 방문만으로도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식의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운영이 있었음
- 이에 가족 간의 관계로서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 “가족관계 해체”는 가족 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용어로, 단절보다 순화한 용어임

- (가)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나)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 (다)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 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민법 제4조」)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동 조항을 적용받던 부양의무자가 19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계속 적용 불가
- (3)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신고,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지생보 심의)
-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이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
  - (3)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나 재산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되어 있거나,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처분이 곤란하여 해당 재산을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 (4)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 보장기관장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아래의 수급(권)자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가) 부양비를 제외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상기 수급(권)자 가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로서, - 반드시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나) 수급(권)자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입원이 필요한자가 있는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다) 수급(권)자인 가구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라) 수급(권)자가 질병·장애·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 가구로, 부양의무자 등(전 배우자, (조)부모, 자녀의 친생부모)으로부터 양육비 등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양육비 등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마)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으로서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손자녀의 부모를 제외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바) 수급(권)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사)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생활상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보장 결정하고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수급자 보장 요망 - 보장비용 징수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징수 제외 가능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팀과 통합조사·관리팀 간 사례회의를 활용하는 등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수급 신청가구 특성,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 수급신청가구의 선보장 후징수동의 여부 등 고려
- 수급자 소명서(동의여부), 부양의무자 미지원 사유서(필요시), 공무원 사실조사보고서, 수급자 가구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여 심의

#### <취약계층 우선보장 심의 사례>

- ◎ (사례1)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30%이하가구  
 - (부양상황) 부양의무자가 모친으로, 실제 소득은 없고 집으로 인해 부양능력 있음으로 탈락, 실제 집을 처분하였으나 기타 재산으로 인정되고, 부채 상환 증빙 서류 등 제출이 어려운 상황(다른 자녀의 부채 상환 등)  
 - (보장비용징수) 보장비용 징수는 보장비용 징수 제외 대상(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A+B) \* 60% 이하)에 해당하여 징수 제외 처리
- ◎ (사례2) 질병, 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한부모가구  
 - (부양상황)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은 상속재산인 토지가 많아 부양능력있으나 공동명의라 매각이 어렵고, 작년 일용근로를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인지능력을 상실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  
 - (보장비용징수) 부양의무자의 현재 건강상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생보 심의를 통해 징수 제외
- ◎ (사례3) 알콜 의존증으로 요양병원 입퇴원 반복하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대상자  
 - (부양상황) 부양의무자는 대학생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지출이 많아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  
 - (보장비용징수) 자녀 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은 징수 결정
- ◎ (사례4) 주거환경 열악, 만성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부양상황)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 두딸 양육 비용 발생, 개인부채까지 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로 부양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연락은 하고 지내나 경제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  
 - (보장비용징수) 부양의무자의 지출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생보 심의를 통해 징수 제외



- (5) 수급(권)자의 채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압류 및 급여를 채권추심 당하거나, 파산자가 되는 등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 (6) 부양의무자가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부채(의료·교육·주거부채에 한함)를 상환하고 있어 소득에서 상환금액(원금+이자)을 제외할 경우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7) 부양의무자의 임금이 체불되어 체불액을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 ※ 회사의 임금체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의를 통해 체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체불여부 확인
- (8)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상태는 아니나 외국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9)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다음의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①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  $[(A \times 40\%) + (B \times 100\%)]$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60% 미만  $[(A+B) \times 60\%]$
  - (나) (가)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고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초과 하더라도 수급(권)자는 보장 가능
      - ※ 동 조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 제외가 가능한 사례로 이미 인정하던 경우이기에(지침 286쪽 (다)-③ 참조)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기 기준 미만인 경우, 수급자의 생활실태 등이 열악하면 수급(권)자는 보장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임
- (10)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라)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1) 적용대상 요건(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고려하지 않음)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양육시설, 제4호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아동
- \* (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해당 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나이기준) 30세 생일 도래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2)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적용

- ※ 기타 처리기준은 바)항목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와 동일(지침 194~196쪽)

마)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평가 기준으로 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834만원 이하인 경우
-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별도가구로 보호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 예)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3) 유의사항

- 해당 장애인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 ※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구 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여부		사후관리(확인조사)	
	보장여부	보장비용 징수여부	소득·재산조사	부양여부 등 생활실태조사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가)항]	심의 불필요	심의불필요 (징수제외)	조사 제외	조사
부양거부·기피인 경우 [나)항]	심의	심의	조사 제외	조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다)항]	심의	심의	조사	조사

## 【20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단위 : 원)

수급 (권)자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미약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미약	1,757,194 ~ 2,460,072 (2,600,647)	2,991,980 ~ 3,694,858 (3,694,858)	3,870,577 ~ 4,573,455 (4,573,455)	4,749,174 ~ 5,452,052 (5,452,052)	5,627,771 ~ 6,330,649 (6,330,649)
		있음	2,460,072 (2,600,647)	3,694,858 (3,694,858)	4,573,455 (4,573,455)	5,452,052 (5,452,052)	6,330,649 (6,330,649)
2인	미약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미약	1,757,194 ~ 2,953,986 (3,514,389)	2,991,980 ~ 4,188,772 (4,428,130)	3,870,577 ~ 5,067,369 (5,078,292)	4,749,174 ~ 5,945,966 (5,945,966)	5,627,771 ~ 6,824,563 (6,824,563)
		있음	2,953,986 (3,514,389)	4,188,772 (4,428,130)	5,067,369 (5,078,292)	5,945,966 (5,945,966)	6,824,563 (6,824,563)
3인	미약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미약	1,757,194 ~ 3,305,425 (4,164,551)	2,991,980 ~ 4,540,211 (5,078,292)	3,870,577 ~ 5,418,808 (5,728,454)	4,749,174 ~ 6,297,405 (6,378,616)	5,627,771 ~ 7,176,002 (7,176,002)
		있음	3,305,425 (4,164,551)	4,540,211 (5,078,292)	5,418,808 (5,728,454)	6,297,405 (6,378,616)	7,176,002 (7,176,002)
4인	미약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미약	1,757,194 ~ 3,656,864 (4,814,712)	2,991,980 ~ 4,891,650 (5,728,454)	3,870,577 ~ 5,770,247 (6,378,616)	4,749,174 ~ 6,648,844 (7,028,778)	5,627,771 ~ 7,527,441 (7,678,939)
		있음	3,656,864 (4,814,712)	4,891,650 (5,728,454)	5,770,247 (6,378,616)	6,648,844 (7,028,778)	7,527,441 (7,678,939)
5인	미약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미약	1,757,194 ~ 4,008,302 (5,464,874)	2,991,980 ~ 5,243,088 (6,378,616)	3,870,577 ~ 6,121,685 (7,028,778)	4,749,174 ~ 7,000,282 (7,678,939)	5,627,771 ~ 7,878,879 (8,329,101)
		있음	4,008,302 (5,464,874)	5,243,088 (6,378,616)	6,121,685 (7,028,778)	7,000,282 (7,678,939)	7,878,879 (8,329,101)

※ (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취약계층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 일반수급자에 대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조건1> [(A×40%) + (B×100%)] 기준과 <조건2> 기준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 (A+B)×74%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적용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부양능력 미약	B×100% ≤ 부양능력판정소득액×30% or 15% < 취약계층 수급(권)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능력 있음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아래 <조건1>과 <조건2>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적용						
1인가구	2,600,647	3,694,858	4,573,455	5,452,052	6,330,649	7,209,246	8,092,593
2인가구	3,514,389	4,428,130	5,078,292	5,945,966	6,824,563	7,703,160	8,586,507
3인가구	4,164,551	5,078,292	5,728,454	6,378,616	7,176,002	8,054,599	8,937,946
4인가구	4,814,712	5,728,454	6,378,616	7,028,778	7,678,939	8,406,038	9,289,385
5인가구	5,464,874	6,378,616	7,028,778	7,678,939	8,329,101	8,979,263	9,640,823
6인가구	6,115,036	7,028,778	7,678,939	8,329,101	8,979,263	9,629,425	10,283,101
7인가구	6,768,713	7,682,454	8,332,616	8,982,778	9,632,940	10,283,101	10,936,778

※ 아래 <조건1>과 <조건2>의 음영부분을 조합하여 작성

<조건 1> 일반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 (A×40%) + (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인가구		3,694,858	4,573,455	5,452,052	6,330,649	7,209,246	8,092,593
2인가구				5,945,966	6,824,563	7,703,160	8,586,507
3인가구					7,176,002	8,054,599	8,937,946
4인가구						8,406,038	9,289,385
5인가구							9,640,823
6인가구							
7인가구							

<조건 2> 기준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 (A + B)×74%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인가구	2,600,647						
2인가구	3,514,389	4,428,130	5,078,292				
3인가구	4,164,551	5,078,292	5,728,454	6,378,616			
4인가구	4,814,712	5,728,454	6,378,616	7,028,778	7,678,939		
5인가구	5,464,874	6,378,616	7,028,778	7,678,939	8,329,101	8,979,263	
6인가구	6,115,036	7,028,778	7,678,939	8,329,101	8,979,263	9,629,425	10,283,101
7인가구	6,768,713	7,682,454	8,332,616	8,982,778	9,632,940	10,283,101	10,936,778

## '20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금액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권)자가구(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18%로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A+B)×18% ]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임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원)

수급 (권)자	부양 의무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632,590	854,851	1,012,999
1인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58,412,973	269,098,621	276,701,864	284,305,108	291,908,351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88,825,946	310,197,242	325,403,729	340,610,215	355,816,702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66,412,973	177,098,621	184,701,864	192,305,108	199,908,351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6,825,946	218,197,242	233,403,729	248,610,215	263,816,702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31,912,973	142,598,621	150,201,864	157,805,108	165,408,351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62,325,946	183,697,242	198,903,729	214,110,215	229,316,702
2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854,851	1,077,113	1,235,260	1,393,408	1,551,555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69,098,621	279,784,269	287,387,513	294,990,756	302,593,99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10,197,242	331,568,538	346,775,025	361,981,512	377,187,998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77,098,621	187,784,269	195,387,513	202,990,756	210,593,99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18,197,242	239,568,538	254,775,025	269,981,512	285,187,998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42,598,621	153,284,269	160,887,513	168,490,756	176,093,99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83,697,242	205,068,538	220,275,025	235,481,512	250,687,998	



수급 (권)자	부양 의무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12,999	1,235,260	1,393,408	1,551,555	1,709,703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6,701,864	287,387,513	294,990,756	302,593,999	310,197,24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25,403,729	346,775,025	361,981,512	377,187,998	392,394,485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84,701,864	195,387,513	202,990,756	210,593,999	218,197,24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33,403,729	254,775,025	269,981,512	285,187,998	300,394,485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50,201,864	160,887,513	168,490,756	176,093,999	183,697,24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8,903,729	220,275,025	235,481,512	250,687,998	265,894,485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171,146	1,393,408	1,551,555	1,709,703	1,867,850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84,305,108	294,990,756	302,593,999	310,197,242	317,800,48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40,610,215	361,981,512	377,187,998	392,394,485	407,600,971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2,305,108	202,990,756	210,593,999	218,197,242	225,800,48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48,610,215	269,981,512	285,187,998	300,394,485	315,600,971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57,805,108	168,490,756	176,093,999	183,697,242	191,300,48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14,110,215	235,481,512	250,687,998	265,894,485	281,100,971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329,294	1,551,555	1,709,703	1,867,850	2,025,998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91,908,351	302,593,999	310,197,242	317,800,486	325,403,72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55,816,702	377,187,998	392,394,485	407,600,971	422,807,458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9,908,351	210,593,999	218,197,242	225,800,486	233,403,72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63,816,702	285,187,998	300,394,485	315,600,971	330,807,458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65,408,351	176,093,999	183,697,242	191,300,486	198,903,72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29,316,702	250,687,998	265,894,485	281,100,971	296,307,458		

’20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대상
  - 소득기준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50%
  - 재산기준 : (A+B)×18%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50%
  - 가구특성 : 가구에 근로능력있는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권)자가구(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50%로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소득환산액이 [(A+B)×50%]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임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 ※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 ※ 부양의무자 가구가 재산기준 특례 소득기준(B×50% 미만)과 가구특성 기준을 만족하면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기본재산액은 포함)이 아래 표 미만인 경우 재산기준 특례 기준 만족

(단위 : 원)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대도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757,194	2,374,587	2,813,886	3,253,184	3,692,483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12,480,481	342,162,837	363,282,957	384,403,077	405,523,197
	중소도시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96,960,962	456,325,673	498,565,913	540,806,154	583,046,394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20,480,481	250,162,837	271,282,957	292,403,077	313,523,197
	농어촌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04,960,962	364,325,673	406,565,913	448,806,154	491,046,394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85,980,481	215,662,837	236,782,957	257,903,077	279,023,197
2인	대도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2,374,587	2,991,980	3,431,279	3,870,577	4,309,876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42,162,837	371,845,192	392,965,313	414,085,433	435,205,553
	중소도시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56,325,673	515,690,385	557,930,625	600,170,865	642,411,106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50,162,837	279,845,192	300,965,313	322,085,433	343,205,553
	농어촌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64,325,673	423,690,385	465,930,625	508,170,865	550,411,106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15,662,837	245,345,192	266,465,313	287,585,433	308,705,55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29,825,673	389,190,385	431,430,625	473,670,865	515,911,106



수급 (권)자	부양 의무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2,813,886	3,431,279	3,870,577	4,309,876	4,749,174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63,282,957	392,965,313	414,085,433	435,205,553	456,325,67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98,565,913	557,930,625	600,170,865	642,411,106	684,651,346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1,282,957	300,965,313	322,085,433	343,205,553	364,325,67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06,565,913	465,930,625	508,170,865	550,411,106	592,651,346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36,782,957	266,465,313	287,585,433	308,705,553	329,825,67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72,065,913	431,430,625	473,670,865	515,911,106	558,151,346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3,253,184	3,870,577	4,309,876	4,749,174	5,188,473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84,403,077	414,085,433	435,205,553	456,325,673	477,445,79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40,806,154	600,170,865	642,411,106	684,651,346	726,891,587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92,403,077	322,085,433	343,205,553	364,325,673	385,445,79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48,806,154	508,170,865	550,411,106	592,651,346	634,891,587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57,903,077	287,585,433	308,705,553	329,825,673	350,945,79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14,306,154	473,670,865	515,911,106	558,151,346	600,391,587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3,692,483	4,309,876	4,749,174	5,188,473	5,627,771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05,523,197	435,205,553	456,325,673	477,445,793	498,565,9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83,046,394	642,411,106	684,651,346	726,891,587	769,131,827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13,523,197	343,205,553	364,325,673	385,445,793	406,565,9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91,046,394	550,411,106	592,651,346	634,891,587	677,131,827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9,023,197	308,705,553	329,825,673	350,945,793	372,065,9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56,546,394	515,911,106	558,151,346	600,391,587	642,631,827	